

第268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10 號

國會事務處

2007年7月3日(火) 午後 3時

議事日程

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
5.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商法 일부개정법률안
7. 住宅賃貸借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
8.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대안)
15.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
1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2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
21.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3. 한국고전번역원법안
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
3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33. 사망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35. 航路標識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36. 內水面漁業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원양산업발전법안
38. 소형선박저당법안
3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4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4.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45.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
51. 公認勞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 敎員의勞動組合設立및운영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53.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54. 流通團地開發促進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5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6.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7.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5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59. 私立學校法 일부개정법률안
60.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

附議된案件

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4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4
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이병석·이상득·배일도·김재원·이인기·신상진·황우여·김무성·김정훈·김충환·김우남 의원 발의) 4
4.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4
5.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항 의원 대표발의)(우제항·강길부·강창일·김선미·변재일·양형일·우윤근·정장선·최재성·최철국 의원 발의) 4
6. 商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7. 住宅賃貸借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김태환·공성진·김성조·김재경·김재원·박세환·박찬숙·서재관·손봉숙·안상수·안택수·엄호성·윤두환·이계경·이명규·이상배·이시중·임인배·장윤석·주성영 의원 발의) 6
8.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7
9.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7
1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9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9

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9
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 의원 대표발의)(이상경 · 박상돈 · 김태홍 · 주승용 · 박재완 · 정봉주 · 정병국 · 주호영 · 김영주 · 박찬숙 · 이계안 의원 발의) 9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0
15.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엄호성 · 김애실 · 이계경 · 심재엽 · 서상기 · 이해봉 · 고흥길 · 차명진 · 진수희 · 안명옥 · 고경화 · 이한구 · 서병수 의원 발의) 14
1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4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5
1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19.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5
2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29
21.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9
2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택 의원 대표발의)(이규택 · 김기현 · 김정훈 · 이균현 · 엄호성 · 박세환 · 신상진 · 박상돈 · 김부겸 · 황우여 · 고조홍 · 박찬숙 · 김태년 · 유정복 · 박재완 · 권선택 · 허태열 의원 발의) 29
23. 한국고전번역원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유기홍 · 이성권 · 박재완 · 강창일 · 정성호 · 이계경 · 김교홍 · 이경숙 · 안민석 · 이미경 · 김재윤 · 김영춘 · 이광철 · 이인영 · 최재천 · 정의용 · 서혜석 · 민병두 · 정청래 · 백원우 · 김낙순 · 박병석 · 우제창 · 제종길 · 김재홍 · 홍미영 · 윤원호 · 지병문 · 정봉주 · 최순영 · 강기정 · 임해규 의원 발의) 30
24.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장 제출) 30
2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30
26.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31
2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31
28.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영숙 · 이재오 · 김교홍 · 이미경 · 정봉주 · 최순영 · 강기갑 · 현애자 · 서갑원 · 심상정 · 안홍준 · 임인배 · 임해규 · 김애실 · 안명옥 · 김성조 · 진수희 · 박찬숙 · 권경석 · 정중복 · 안경률 · 김양수 · 허천 · 황진하 · 배일도 · 김명주 · 천영세 · 권영길 · 민병두 · 유기홍 · 이균현 · 이영순 · 안민석 · 이원복 · 주호영 의원 발의) 31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33
56.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33
57.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33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원혜영) 인사 34
29.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4
3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 · 정청래 · 김재윤 · 강혜숙 · 이광재 · 김희선 · 윤원호 · 이광철 · 지병문 · 이상호 · 박찬숙 · 이재웅 · 장윤석 · 정중복 · 이재오 · 김학원 · 전여옥 의원 발의) 34
3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5
32.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5
33. 사망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 · 한병도 · 이기우 · 정갑윤 · 이경숙 · 한광원 · 최철국 · 김우남 · 최인기 · 유선호 · 류근찬 · 문석호 · 원혜영 의원 발의) 35
34.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35
35. 航路標識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6
36. 內水面漁業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6
37. 원양산업발전법안(이영호 의원 대표발의)(이영호 · 장영달 · 김진표 · 김동철 · 유기홍 · 정봉주 ·

조일현 · 윤원호 · 김충환 · 김무성 · 이상열 · 김재윤 · 이기우 · 유승희 · 윤호중 · 문석호 · 김형오 · 정장선 · 장향숙 · 강혜숙 · 김종률 · 이상득 · 서상기 · 허태열 · 강길부 · 박명광 · 홍재형 · 박찬석 · 송영길 · 조성래 · 김춘진 · 최철국 · 선병렬 · 이상경 · 노영민 · 홍미영 · 한광원 · 김우남 · 최규성 · 박영선 · 심재덕 · 문병호 · 최재성 · 김성곤 · 원혜영 · 정갑윤 · 우원식 · 조정식 · 조경태 · 이목희 · 이강두 의원 발의) 36

38. 소형선박저당법안(정부 제출) 36

3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36

4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36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37

4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이윤성 · 이명규 ·곽성문 · 김성조 · 박순자 · 원희룡 · 이성권 · 김태환 · 조정식 · 정장선 의원 발의) 37

43.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 · 박상돈 · 이광철 · 서갑원 · 민병두 · 백원우 · 이광재 · 이화영 · 신상진 · 우상호 의원 발의) 38

44.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8

45.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8

4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8

4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 단병호 · 맹형규 · 배일도 · 신상진 · 우원식 · 이경제 · 이상배 · 정진섭 · 제종길 · 조성래 · 한선교 의원 발의) 42

4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4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5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정부 제출) 42

51. 公認勞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2

53.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43

54. 流通團地開發促進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43

5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44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48

5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48

59. 私立學校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영 의원 대표발의)(이은영 · 민병두 · 정봉주 · 강봉균 · 최철국 · 오제세 · 김현미 · 이영호 · 노응래 · 정성호 · 김교홍 · 박기춘 · 선병렬 · 주승용 · 최성 · 문병호 · 변재일 · 장경수 · 우제창 · 최용규 · 이근식 · 유기홍 · 송영길 의원 발의) 48

60.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9

(15시33분 개의)

○의장 임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기노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

출)

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이병석 · 이상득 · 배일도 · 김재원 · 이인기 · 신상진 · 황우여 · 김무성 · 김정훈 · 김충환 · 김우남 의원 발의)
4.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5. 주한미군기지이전예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 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항 의원 대표발의)(우제항 · 강길부 · 강창일 · 김선미 · 변재일 · 양형일 · 우윤근 · 정장선 · 최재성 · 최철국 의원 발의)

(15시35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1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고조흥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고조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천·연천 지역구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고조흥 의원입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박찬석 의원, 임종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통합·수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교수의 실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임용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둘째, 군법무관시험 폐지에 따른 법무관 자원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군법무관을 확보할 때에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장기법무관으로 임용 시 초임계급을 대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에 이미 규정된 합동참모회의 의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마찬가지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장 계급의 장관급장교가 보직 종료 후 재보직되지 못했을 시에는 당연히 전역되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넷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각 군부사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하사·중사로 일정 기간 재직한 분들에 대하여는 중사·상사로 각각 근속진급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임채정 의장, 이용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윤원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수정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해양인적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비상 시 이들 자원의 활용을 위해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도입하여 항해사나 기관사의 면허가 있는 사람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어 3년간 승선근무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하였으며,

둘째, 국방개혁의 하나로 우수한 군 인력의 확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2008년도부터 유급지원병제도를 도입하여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본인의 지원에 의해 1년 6개월의 범위내에서 유급지원병으로 연장 복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먼저 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 관련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기한이 2006년 6월 30일 자로 이미 경과하였으나 미처 퇴직급여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퇴직급여금 신청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제출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법률안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항공작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몇몇 용어 정의를 추가하고 위임사항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무력사용 대상 비행기의 범위를 제한하였고,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증명과 관련하여 외부 자격증에 대한 시험면제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제항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

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 평택시 관계자와 주민들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마련해 주자는 전체 아래 전향적으로 심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수정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사업시행을 위한 연차별 계획의 적시 수립과 실행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보완하였고,

둘째, 산업단지 주변의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규모를 접경지역이나 비수도권지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평택시 등의 건설업체들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일반 공사입찰의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 또는 그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 규정도 보완하여 포함시켰습니다.

이상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의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 법률안에 대하여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고조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3인 중 찬성 181인, 기권 2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5인 중 찬성 185인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0인 중 찬성 188인, 기권 2인으로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8인 중 찬성 177인, 반대 5인, 기권 6인으로서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 6. 商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住宅賃貸借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김태환·공성진·김성조·김재경·김재원·박세환·박찬숙·서재관·손봉숙·안상수·안택수·엄호성·윤두환·이계

경·이명규·이상배·이시중·임인배·장운석·주성영 의원 발의)

8.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9.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5시47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항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명주 의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制司法委員長代理 金命柱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해상운송계약 관련 법체계를 국제무역 실무에 맞게 재정비하고 전자선하증권 및 해상화물운송장 제도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해운강국으로서 세계적인 지위에 걸맞은 해상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선박 소유자의 책임한도와 운송물의 포장·선적 단위당 책임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등 상법 제5편 해상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량 1kg당 2계산단위의 중량기준을 도입하는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운송인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로 하였고,

둘째, 복합운송계약에서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법률에 그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셋째, 개품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특약을 무효화하는 강행규정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준거법 규정은

당사자 간의 자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국제관행에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하였고,

넷째,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선하증권도 종이선하증권의 법적 효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섯째, 선체만을 빌리는 의미인 ‘나용선’이 일본식 표현이라는 지적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자문을 받아 ‘선체용선’으로 수정하였고 그 밖의 불분명한 법문 표현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태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등 사회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전셋집 지원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제안취지에 공감하므로 일정한 법인에게도 대항력 등을 부여하도록 하되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의 범위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이 법의 소관 부처가 법무부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임대인과 임차인인 법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로 특정하였으며 대통령령 등 후속조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수정하여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홍미영 의원, 우윤근 의원, 안명옥 의원, 박명광 의원 및 이계경 의원이 각각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선행요건을 삭제하여 신속히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셋째,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상담조건 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판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행위자·피해자 등에 대한 심문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하나인 접근금지 또는 접근제한 대상에 피해자 외에 가정구성원을 추가하였으며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한 유형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또는 접근제한을 추가하였습니다.

여섯째, 임시조치 중 격리 및 접근금지의 연장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연장하고 보호처분 중 사회봉사·수감명령의 시간을 최대 현행 10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일곱째, 판사가 보호처분 중 감호위탁처분을 한 경우 감호위탁기관은 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박재완 의원, 김성조 의원, 김재윤 의원, 선병렬 의원, 김동철 의원, 김기현 의원 및 이용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폐기하고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 대상에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부패행위 신고처리 기간을 60일로 명시하고 국가청렴위원회가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현행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셋째, 부패행위 신고자 신분보장에 있어서 공직자인 신고자와 비공직자인 신고자의 차이를 배제하고 국가청렴위원회로 하여금 비공직자인 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도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제35조의2에서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이 신고자의 소속기관 등을 의미하는지 피신고자

의 소속기관 등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여 이를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 감독하는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밖에 준용규정 관련 미비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김명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8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인으로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3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8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인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2.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 의원 대표발의)(이상경 · 박상돈 · 김태홍 · 주승용 · 박재완 · 정봉주 · 정병국 · 주호영 · 김영주 · 박찬숙 · 이계안 의원 발의)

(16시01분)

○**부의장 이용희** 의사일정 제10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정무위원회의 신학용 의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신학용**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의 신학용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같은 제명의 박찬숙 의원 대표발의안과 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자로 하여금 한글 및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주요 내용을 부호·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도록 하여서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같은 제명의 이상경 의원 대표발의안과 정부 제출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촉진시키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 사업 관련성 요건을 폐지하였고,

둘째, 지주회사의 SOC법인에 대한 출자를 촉진하여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주회사가 5%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이 제한되는 비계열 국내 회사의 범위에서 SOC법인을 제외시켰습니다.

셋째, 사전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기업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위한 사후 감독체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금융거래정보 요건을 상호출자, 탈법행위 조사를 위해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양수 의원, 김애실 의원, 신학용 의원 및 이계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보공개서의 등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보공개서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가맹금 예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본부로부터 안정적인 영업 지원을 받도록 하고 사기 거래로 인한 피해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가맹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던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각종 법령과 의전 관행에서 대법원장과 같은 사법부의 공동 수장으로 예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신학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인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3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6인으로서 가맹사업거래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1인, 기권 3인으로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6시10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박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박영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박영선입니다.

지금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정부와 이종구 의원이 각각 제출한 2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재정경제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6개 법률을 통합 개편한 것입니다.

현행 법률은 금융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금융업 간에 검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규제체제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자본시장의 자금 중개기능 강화 및 금융투자업의 경쟁력 향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본시장에 관한 법체계를 획기적

으로 개편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의 활성화 및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융투자회사가 신종 상품을 용이하게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가 미비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원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했습니다.

둘째,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고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은 인가업무로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은 등록업무로 규정하였으며 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각 금융투자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를 나누어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6개 금융투자업의 겸영을 허용하되 이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통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는 매매정보 제공 금지,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공간과 전산설비의 공동이용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의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입증책임은 투자자가 아닌 금융투자회사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위험 감수능력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고 금융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 의무, 적합성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계약해지권, 금융투자협회에 의한 수수료 비교공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재조치 공개 의무 등을 규정하여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에 자금이체 업무를 포함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직접소액결제 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개인 고객에 한하여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고 법인 고객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금융결제원 규약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대상과 목적을 한정하여 자료제출요구권,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요구권 및 공동검사요구

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 시스템 참가 문제는 논란도 많았고 이 법의 주요 골격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지만 한국은행과 재경부가 이에 합의하였기에 재경위에서는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책임감을 믿고 이를 존중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밖에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부존함)

○**부의장 이용희** 박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두 분 의원으로부터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인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토론 시간은 한 분당 7분 내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안산 상록을 출신 무소속 임종인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을 의원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법은 한미 FTA 협정에서 미국에게 제정을 약속한 법입니다. 한미 FTA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법에 대해서 마땅히 반대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법은 금융 규제를 대거 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미국계 투자은행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목적이 큽니다. 또 증권·금융사의 지급결제 허용으로 재벌들이 사실상 은행을 소유하게 돼서 금융산업 분리원칙이 훼손됩니다. 또 서민과 중소기업에게는 금융을 융통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됩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강화하여 제2의 외환위기를 가져올 위험한 법입니다.

먼저 핵심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금융투자회사에게, 즉 증권사나 보험사에게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행의 본질적 기능인 지급결제 기능이 증권·보험사에게도 허용되면 금융산업—은행, 증

권, 보험—간에 장벽이 해제되고 경쟁도 업계 내 경쟁에서 업계 간 무한경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둘째, 이 법이 시행되면 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주의 규제에 의해 다양한 금융상품이 시중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특히 국내에 상주하는 해외 금융투자회사들은 내국민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은행·투자·보험 기능을 포함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이한 돈놀이 상품들을 쏟아내며 국내 자금시장의 실력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법이 통과되면, 첫째 금융 양극화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금융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수익성만 추구하게 되면 저소득층이나 영세업자, 중소기업주들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 이들은 카드대출이나 대부업체 등 고금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연이율 2433%라는 기가막힌 이자를 문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신체포기 각서를 쓰고 돈을 빌리는 서민들이 지금 이러한 행동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일이 더 강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 제조업이 치명타를 맞게 될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금융허브론에는 산업정책적인 검토가 빠져 있습니다. 자통법으로 한국이 금융허브가 되면 원화가 절상되어야 하며 원화가치도 매우 불리해져서 수출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한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계 은행, 미국계 기업들의 적대적 M&A를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국제투기자본의 피해를 엄청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로 들어올 외국자본이 더 쏟아져 들어오게 돼서 토종은행이나 기업들은 더 많이 외국자본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금융업체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산업 간에 장벽이 없어지고 업계 간에 무한경쟁이 되어 금융업체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사회안정과 통합에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할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투기자본을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것으로는 가변예치 의무제,

세이프가드제, 외국자본의 소유 한도 및 의결권 제한 조치, 그리고 엑스-플로리어법이 있습니다. 엑스-플로리어법은 국가안보에 영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의 투자를 막는 법으로서 지금 산자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이병석 의원께서 법안을 제출해 주셨고 그다음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이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외환 자유화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 차입의 급증을 방지하고 이 자금이 부동산 투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부동산 투기를 하는 일을 막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서민금융기관 등을 만들어서 금융기관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은행 3층 구조, 일본의 지역금융 강화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원활한 자금순환 유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일본의 금융평가법 제정 운동, 미국의 지역채투자법 등 금융의 공공성 이행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이 제정되면 한국의 일부 대형 은행들과 극소수 부유층이 세계적인 투기판에서 약간의 수익을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제조업이 무너지고 실업난이 커지며 금융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우리나라 사회는 총체적인 양극화가 악화될 것입니다.

개인이든 중소기업이든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된 소외계층들은 은행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십 배의 비싼 이자를 지불하고 사채시장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 법의 통과를 우리나라 금융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IMF 외환 위기보다 더 많은 재앙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고, 이것은 미국의 특히 나쁜 투기 자본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을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감안하셔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용희** 임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학용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용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계양갑구 출신 신학용 의원입니다.

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의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곳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자본시장이 육성돼야만이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신념하에 이 법안 통과에 많은 신경을 써 왔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임종인 의원님께서 몇 가지 이유를 대면서 반대토론을 했지만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면에서, 그 쟁점에 대해서 반박하고자 하고 나머지는 왜 통과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 논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업이 국제화되면 외국자본에 다 먹힐 것이다…… 이미 1997년 외환 위기 이후에 우리의 금융시장은 완전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픈된다 해 가지고 더 이상 오픈될 게 없습니다.

요번 FTA 협상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만전의 준비를 하면서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우려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급결제 기능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셨는데 지금 이 법안은, 원래 원안에는 지급결제 기능을 말하자면 증권금융을 통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마는 그것도 은행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은행을 통한 지급결제를 하는 그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원안에 의한 지급결제 기능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은행을 통해서 하는 건 그대로 되고 있다는 말씀, 단 편리한 점에서 조금 더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 안전장치 문제를 하는데요, 지금 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용금고 등에도 지급결제 기능에다가 다른 환업무까지 다 맡기고 있는 실정에 대형화되어 있는 증권업에 지급결제 기능을, 이마저 제한시켰다는 것에 저는 반대하지만 전체를 위해서 현재 제한된 상황에서라도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경제를 보면 전통적인 저부가가치 제조업을 성장 동력으로 해서는 21세기를 헤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수억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를 바탕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왔던 분야에서 지금 경쟁력을 완전히 잠식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고부가가치 혁신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체제를 개편했기 때문에

제2의 고도 성장기를 맞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들 선진국에서 많은 일자리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주력산업, 제조업은 미국에서는 거의 없어졌다고 할 정도로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속 꾀꾀이 살아갈까, 바로 투자는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업이라는 게 일반적인 공통된 인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금융법제는 1960년대의 틀에 묶여 있어서 변화되는 금융환경을 뒷받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현행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법 등 모두 과거의 전통적 금융기법과 금융상품만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금융상품, 새로운 금융기업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태의연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변화를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 분야가 발전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는 금융 분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자본시장의 발전이 미흡하면 차세대 성장산업의 발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규모는 작지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혁신형 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과거 공장이나 대규모 장치 설비를 가진 전통적 제조업의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지만 지금 위험은 크지만 수익이 높은 이러한 혁신형 기업, 또 기술집약적 기업들은 물질 자본이 없고 오직 지적재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적자본을 가지고 성장 기반으로 하기에는, 자본시장 외에는 투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들이 리스크 산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보가 없는, 그리고 전망이 없는, 오직 기술력이나 조그마한 가능성을 믿고 지금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 줍니다. 또한 자본시장의 발전이 미흡하면 우리 경제가 주기적인 자산 버블에 노출되어 체질이 약화됩니다.

최근 시중 유동성의 증가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졌던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 흐름 구조를 창출해야만이 시중의 유동성 물꼬를 생산적인 기업 부문으로 돌려놓을 수 있고요. 또 이 시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법률안은 우리 금융투자회사들의 영업모델 및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인 제약을 철폐함으로써 선진 투자은행과 동등한 수준의 영업모델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선진 금융시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든 신용금융상품이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한다면 머지않아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으뜸이 되는 토종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금융투자업은 많은 고급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의 든든한 차세대 성장산업이 되어 줄 것입니다.

자본시장 중심으로 자금 순환이 가속화되면 우리 경제 내의 여유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 들어가 기업이 투자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는 더 높은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금융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의 노력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간 합병이나 일자리의 변동 등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외형도 크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기회는 확대되고 고용 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경제의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고 착실히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단기적인 시야에 사로잡혀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오늘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이 통과되어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희 신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3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4인, 기권 23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엄호성·김애실·이계경·심재엽·서상기·이해봉·고홍길·차명진·진수희·안명옥·고경화·이한구·서병수 의원 발의)

1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6시31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16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엄호성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엄호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부산 사하갑 출신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과 제16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장 이동,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에 장기간 예치된 예금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들은 이를 잠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권리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돌려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휴면예금을 동일은행의 활동계좌로의 자동이체를 통하여 찾아준 바 있으나 활동계좌가 다른 금융기관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체국·보험사 등 다른 금융기관들도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휴면예금 등

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조회 및 청구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하여 그 실적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특히 휴면예금 등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원권리자에게 충분히 그리고 신속히 돌려주고 난 후에 남는 금액으로 활용하는 것이 원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휴면예금 등을 다른 금융기관의 활동계좌로 이체하여 원권리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휴면계좌 원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휴면예금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김종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관행이 아직 시장에 정착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신속하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였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2005년 12월 31일 유효기간 도래로 이미 실효되었으므로 이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을 저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제정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하였으며 종전 법률과 달라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업신용 위협에 대한 평가를 채권은행이 자율적으로 여신 사후관리를 통하여 수행하도록 하였고,

둘째,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 중 해당 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에 1주를 더한 수를 초과하는 부

분에 대하여는 협약서 제출 없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출자전환 및 채권 재조정을 하는 경우 은행법 등의 출자제한 규정을 적용 배제하는 특례 규정을 관리 절차가 완료 또는 중단된 후 2년까지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 및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엄호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78인, 반대 7인, 기권 16인으로서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아직 안 하셨어요?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6인, 반대 7인, 기권 3인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38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노현송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노현송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서울 강서을 출신 노현송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김충환 의원, 한광원 의원,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7건의 개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취지를 반영하여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그 주요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격차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재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와 특별시 자치구가 공동과세하여 서울시세로 과세된 재산세의 전부를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 자치구 간의 재정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과세비율에 있어서는 시행 첫해인 2008년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비율이 40 대 60, 2009년에는 45 대 55, 2010년부터는 50 대 50으로 단계적으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세 수입이 줄어드는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지원토록 함으로써 구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거 2007년 7월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의 인상 억제를 위하여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현행 21.5%

에서 32%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행세 탄력세율 인상에 따른 유류가격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인 교통세를 조정해 휘발유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경유 소비자들의 부담 또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외국인 소유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 등을 국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수입하는 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치분권 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소환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둘째, 국제자유도시 여건 조성 부문에서는 관광·문화·스포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증진 등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투자 개선 및 권한 이양 부문에서도 투자환경의 개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을 위한 사항들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부안 중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소환의 구체적인 청구요건을 도조례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소환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청구요건을 도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일반법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노현송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九 議員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강남갑의 이종구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공동재산세안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정신과 지방자치제의 수호라는 측면에서 이 법률안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서울지역 이외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특히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에는 25개 구청이 있습니다. 이번 공동재산세안은 강남구에서 약 1000억, 서초구에서 한 500억 그리고 송파구에서 300억 그리고 종로 중구에서 약 100억씩 이렇게 2000억 원을 거둬서 나머지 자치구 20개에 약 100억 원씩 이렇게 나눠 갖겠다는 이런 발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연 큰 비스킷을 뺏아서 부스러기를 나눠 줌으로써 불균형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렇게 빼앗아 나누어 주는 방법은 결국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25개 자치구들 간에 주는 쪽과 받는 쪽이라는 정서적인 양극화를 초래하게 될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 제117조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산관리권, 재정자치권 및 지방세부과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들의 세수구조는 약 9 대 1입니다. 이런 방대한 세수원을 지니고 있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단 5%만 인상을 하면 보다 근본적인 재정 격차가 해소됩니다.

이같이 보다 나은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7조2항 과잉금지의 원칙을 해치면서까지 미봉책인 공동재산세안이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면서 이 법은 분명히 위헌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 개정안을 통해서 서울특별시에만 적용되는 조항을 삽입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왜 경기도의 분당·과천·일산·용인의 재산세를 빼앗아서 가평·과주에 나눠 주지 않습니까? 또 부산 수영구 해운대구의 재산세를 뺏아서 서구나 영도구에 왜 나눠주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지방세법 개정이 아닌, 서울시에 국한되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서 한다면 모를까 이

것은 분명히 위헌적인 요소를 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렇게 서울의 특정 구청의 재산세를 뺏어서 다른 구청에 주는 데 왜 국회가 이렇게 나서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재산세라는 것은 지역 밀착성이 강한 세금입니다. 즉 토지나 건물이나 주택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나무 심기도 하고 이렇게 환경미화작업, 이렇게 쓰라고 재산세를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강남구의 예를 들겠습니다. 강남구에 타워팰리스가 있고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강남구가 재산세를 거둬서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나 타워팰리스에 계신 분을 위해서 이 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강남구에는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많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포함한 빈곤층의 인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 및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역시 서울시에서 다섯 번째로 이렇게 많은 곳입니다.

이 얘기는, 강남구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세라는 것은 강남구의 서민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결국은 쓰여지는 것이고 이 공동세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1000억이라는 자금이, 1000억이라는 재원이 서울시로 넘어갔을 때는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궁극적으로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재산세를 서울시가 일부 보전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서울시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의 아까 말씀드린 가져가는 측의 20개 구에서 시의원들이 이것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안도 저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강남구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포함을 해서, 종합부동산세도 원래 재산세였습니다. 이것을 국세를 포함해서, 국세를 10조 원을 현재 강남구에서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 세수 중에서는 15%가 넘는 1조 5000억 원을 강남구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또 이 중에서 6500억 원은 이미 다른 자치구에 교부금으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세안,

여러분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지방세법에 약간의 끼워넣기가 있습니다. 이 끼워넣기는 뭐냐 하면 교통에너지 세액에 부과되는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215에서 1000분의 320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기름값이 높아서 서민·중산층들이 이렇게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렇게 또 주행세를 갖다가 대폭 올리는 것은 뭐니까?

저는 이러한 두 가지 점에서 이번의 이 지방세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용희 이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의원 저는 서울 노원 을구 출신의 우원식 의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찬성토론을 하고자 나왔는데요, 서울의 강남·북 간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합니다. 물론 강남·북 간의 불균형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 그리고 도시와 지방 간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서울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새 서울은 소위 강남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이 만들어져서 서울을 하나의 공동체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자치구의 주 세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세를 보면 2007년의 강남구는 2760억이 걷히고요, 강북구는 173억 그래서 무려 격차가 2580억, 한 1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강남구의 재산세는 9156억이 되고 그리고 강북구는 한 360억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격차가 매우 심각해 집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반영되느냐?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07년 강남구가 학교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75억 수준입

니다. 그렇지만 강북지역의 금천구나 성북구는 한 5억 정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10년 누적됐습니다. 학교시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교육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 이것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재산세를 구에서 걷지 말고 일부를 떼어서 40%~50%를 서울시가 걷어서 고르게 나누어 주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반대토론 하신 의원님께서 ‘뺏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뺏어간다는 말은 강남구 본인인, 아니면 발전해 있는 지역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발전했다면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서울의 또 다른 서울 강남을 만들 때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말죽거리 아닙니까? 허허벌판에 강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서울을 만들면서 박정희 정부 시절에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주택업자들에게 부동산투기억제세, 영업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모두 면세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사 가고 건축하게 그런 특혜를 줬습니다. 그리고 초기 건설 당시에 사회기반시설을 비롯한 초기 건설 비용을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곳에 사람들이 이사 가지 않으니깐 그곳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울의 당시 일류 학교라고 하는 경기 숙명 이런 학교를 옮겨서 8학군을 만들어 주는 것을 통해서 강남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강남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강남을 만들 때 강북지역의 많은 주민, 모든 주민들의 희생과 양보 위에서 강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강남에서 ‘강남의 재산세는 강남만의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강남이기주의입니다. 그것은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양보한 강북 주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남을 더 이상 강남공화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 속에 있는 강남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자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자기 지

역을 발전시키자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출발선부터 이렇게 달라서 강북구나 금천구는 ‘이런 지방자치 왜 하나’ 이런 원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지방재정권을 침해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재산세가 지방세의 성격을 갖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기초세가 맞느냐 광역세가 맞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입법정책입니다. 조세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울 모든 주민들의 희생과 양보 위에서 만들어진 강남과 서울이 소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이 지금 조세정책의 핵심이고 그것에 따라서 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것을 위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행자위 소위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때문에 소위가 두 차례 무산이 됐고 또 세 차례에 걸쳐서 전체회의가 무산이 됐습니다. 억지로 억지로 통과되고 그 마지막에 가서는 헌법학자들까지 불러서 토론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더 이상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의 과정을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법을 찬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이 법에 만족하는 것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진정한 강남·북 간의 불균형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100%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북지역의 희생과 양보 위에서 만들어졌는데 왜 50%밖에 안 됩니까? 그것도 13년 동안 이미, 처음 95년 지방자치를 시작할 때 조순 서울시장님이 이 문제를 제기해서 김영삼 정부 시절에 차관회의까지 통과됐던 것입니다. 강남 쪽 요청에 의해서 국무회의에서 보류됐습니다. 정당성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3년 동안 강남 쪽이 일방적으로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된 균형발전하려면 100%가 아니라 120% 강북 쪽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100%를 주장했습니다만 워낙 강남 쪽에서 단 1%도 못 하겠다 그리고 행자위를 거치면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래서 40%~50% 하는 안에 양보해서 동의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분통 터지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강남 강북의 균형발전을 시작하자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40%, 50%밖에 되지 않지만 양보하면서 동의합니다.

균형발전하자 이런 것은 우리 사회를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가 최소한 만들어 줘야 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서울의 균형발전 또 더 나아가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만들어 가는데 그 시작의 문을 열어 주실 것을 정말 간곡히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희 우원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孔星鎭 議員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강남을 출신 공성진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님께서 하신 발언을 듣고 있자니 여기가 국정을 다루는 국회인지 서울 시정을 다루는 서울시 의회인지 혼란이 올 지경입니다.

오늘 저도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한정하여 공동재산세를 도입키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대안)이 오늘 통과된다면 이는 지방자치제를 골간으로 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조종으로 작용이 될 것입니다.

공동재산세 도입 취지인 자치구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시켜야 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본 의원 또한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만 유독 그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은 특별법이 아닌 한, 조금 전에 이종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반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니 할 수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은 서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컨대 경기도 용인시

는 3538억으로 동두천시의 191억에 비해 무려 18배, 충남 천안과 계룡시는 26배, 경북 칠곡과 울릉군은 20배, 그리고 경기도와 제주도는 22배의 재정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강남구와 강북구는 각각 2308억 원과 168억 원으로 13배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희 부의장, 이상득 부의장과 사회교대)

자치구 설립살이인 예산 규모를 비교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강남구는 조정교부금을 받지 않고 3957억이었지만 강북구는 조정교부금 936억을 지원받아서 2085억으로 강남구가 1.8배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수로 보면 강남구가 55만 명으로 강북구 34만 명의 약 1.6배인 것을 감안할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만에 하나 서울시만을 대상으로 한 공동재산세가 통과된다면 나중에는 광역자치단체 간 지방세를 각출해서 중앙정부가 이를 다시 광역자치단체 간에 분배하는 광역자치단체 공동재산세 추진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방자치제도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예측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공동재산세 제도를 실시해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에 어느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을지,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리어 기여 자치구의 재정 충격이 지나치게 크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입니다.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강남, 서초, 송파, 중구 등 4개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규모는 강남이 764억, 서초가 423억, 송파구가 239억, 중구 95억으로 총계 1523억에 이르는데 이것은 기여세입의 50%에서 6%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혜를 받는 22개 구는 최대 노원구가 77억, 최소 양천구가 44억으로서 재정 불균형 해소 효과는 극히 미미할 뿐입니다. 이처럼 공동재산세 제도의 도입 취지인 재정자립도 개선 효과는 미미한 반면 기존에 건설하던 자치구들의 재정이 휘청거리게 되어서 지방자치의 본래의 의미는 크게 퇴색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9 대 2 혹은 8 대 2 정도가 됩니다. 일본이나 기타 선진국의 6 대 4, 5 대 5의 비율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방자치 실시 이전의 조세체계

이며 지방자치 실시 이후 단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현실에 맞게, 지방자치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전면 재조정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다수의 힘으로 손쉽게 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도리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 우리는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여러 평균화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추구하는 것은 1등을 목표로 한 상향 평균화이어야지 1등을 끌어당기는 하향 평균화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까.

행자위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물론 범여권의 많은 양식 있는 의원님들까지도 동 개정안(대안)이 지방자치제를 훼손하고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정안(대안)은 헌법 제117조, 제118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인 재정자치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차원의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을 체쳐 두고 일부 구로부터 강제 징수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과잉입법권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헌법 제37조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지방자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최소한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방자치의 현재적 이념인 보충의 원리에도 위반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동 법안이 이렇게 본회의까지 올라와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회가 위헌임을 뻔히 알고도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회가 위헌법률조차 거르지 못한다는 비난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국회가 아니라 서울시의회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세와 지방세, 서울시와 자치구세의 세원 배분 구조를 재검토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충실히 하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고 위헌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렇게 졸속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국회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재원 배분 특별 연구위원회

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동 지방세법 개정안(대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득** 공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영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서울 중랑갑 출신 이화영 의원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강남·북 간 불균형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한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앞의 토론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법리적으로 복잡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먼저 법리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리적으로 이 지방세법 개정안의 서울특별시세의 세목 교환 문제는 지난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가 있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지난 6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헌법학자를 포함한 여러 전문학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또한 7월 2일 법사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법사위원들께서 충분한 법률적 토론을, 검토를 거쳐서 이 지방세법 개정안이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통과된 법안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강남, 서울…… 여러 의원님들, 대개 서울에 많이 사시는데 서울에 사시면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강남이고 강북인데 다리 하나를 두고 왜 자치구로 나눠 가지고 특정 자치구에서는 한 해에 세금이 9000억씩 걷히고 특정 자치구에서는 한 해에 재산세가 300억 밖에 안 걷히는 이런 상태를 방치해 놔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지방자치제입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면 지방자치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서울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균형 발전을 해 갈 것인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진정한 지방자치이지 지금 현재의……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 자치구세 중에서 재산세가 80%의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우원식 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2007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가장 최저인 강북구가 159억 원이고 강남구가 약 2090억 원, 차이가 지금 현재 1900억 원이 있는데 이것이 2017년이 되면…… 2010년에는 약 3000억 원 차이가 나고 2017년에는 약 9000억 원의 자치구세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 그냥 뒤져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국회가 지난 15년 전쯤에 세목 교환을 통해 가지고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견에 동의해 가지고 15년 전에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같은 것을 맞교환해서 자치구 간의 재정 균형을 이룩해 줬다면 지금과 같은 현저한 강남·북의 격차가 발생했겠습니까?

지금 강남·북의 격차는 아까 우원식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심각한 모습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강남에서 사무 보시느라고 차 타고 다니시다가 다리 건너서 강북으로 와 보십시오. 이렇게 심각한 격차를 왜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강남구가 올 한 해에 교육·학교…… 강남구의 자주재원으로 강남구의 학교에 보조한 비용이 약 75억 원입니다. 그런데 중랑구나 성북구나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자주재원이 없어서 약 5억 원을 지금 학교경비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책걸상이 나빠져도 고치지를 못합니다. 학교의 도서관에 책이 텅텅 비어도 책 한 권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의 학교는 고급음악회도 개최하고 보도블럭 멀쩡한 것 같아 가지고…… 새 보도블럭을 깔고, 그 낡은 보도블럭을 강북에서 옮겨와서 되깔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다 목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을, 법리적으로도 맞고 헌법에도 불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선해야 되겠지요. 그 개선을 해 주는 곳이 바로 국회이고 국가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해 둘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원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강남 개발이 전적으로 강북의 희생에 기초한 것입니다. 지난 70년도에 강북 지역에 개발 제한을 하고 그 개발 제한에서 발생한 재원을 서울시와 국가가, 중앙 정부가 그 재원을 다 받아 가지고 강남에 다 투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남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의 이 강남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 아까 존경하는 이종구 의원님이 ‘약 1000억 원 뺏어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법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2007년 같은 경우에, 2007년을 기준으로 하면 강남구 재산세 수입은 2149억 원이 되고 강북구는 330억이 되는 겁니다. 2200억 또 300억 이 규모가 계속 유지되어져 가는 거예요.

원래 열린우리당 안은 100% 균형세화하자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40%까지 양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도 이 상태가, 40%가 지속적으로 가면 약 10년 뒤에는 또다시 수십 배의 격차가 발생하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해소를 못 해 나간다면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지방자치가 왜 필요합니까?

도리어 자치구를 없애 가지고 광역화하거나 서울특별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갖고 다 나눠 가져 가지고 재산세를 균등하게 쓰면 되지 이 서울이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어리가…… 아까 말씀하신 충청북도 경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경우가 다른 겁니다. 서울은 그야말로 강 하나 건너면 자치구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세수의 차이를 지속시켜 준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 법 개정하면 겨우겨우, 강북구 같은 경우에 내년도 한 130억,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는 한 110억 원 이런 정도 세수가 증대합니다. 100억 증대가 강북구나 중랑구에 얼마나 절실한지 아십니까?

지금 개방형 자율학교라고 해 가지고 중랑구에 원목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만들었는데 이 학교 도서관에 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왜 책이 한 권도 없느냐면 교육부 입장에서는 학교 지어 줬으니까 자치단체에서 좀 채워 주라고 얘기합니다. 중랑구 자주재원 하나도 없습니다. 자주재원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원목고는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학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 책 한 권 못 지원해 주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100억이 그만큼 강북에 있는 자치구에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강남이나 서초나 종로, 중구에서 그것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 뺏어 오냐, 그것 아닙니다. 서울시가 교부금제도를 하면서 다 다시 보전해

줍니다. 다시 보전해 주고 이 불균형을 조금 해소하자고 그러는데 이것을 반대하면 너무 야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방자치 공약이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50% 공동과세 제안했습니다. 그래 갖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득표해 놓고 한나라당에서 반대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반드시 찬성시켜서 우리 강남·북 불균형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17대 국회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득** 이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훈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惠薰 議員**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

서울 서초갑 출신의 이해훈입니다.

저는 오늘 서초갑 지역구 의원으로서 서초·강남의 입장만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재정학자의 입장에서 조세체계의 형평과 효율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상정된 지방세법안의 골자는 이미 다 들으셨다시피 서울시의 경우 재정 격차가 워낙 심하니까 가장 중요한 세원인 재산세 50%를 떼어서 25개 구가 나누어 쓰자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 인식에 동의합니다. 자치구 간의 재정 격차가 크다, 그래서 조정이 시급하다……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인식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처방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방법은 부작용은 굉장히 큰데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이 방식대로 하면 현재 재정자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구들이 재정자립이 안 되는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렇게 해서 걷은 돈을 21개 구에 뿌리기 때문에 1개 구마다 받는 돈은 60~7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결국은 원원이 아니라 같이 하향평준화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쓰면 어떨냐,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쓰면 땀개는 효

과가 5배 이상도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세로 가져간 종부세 중에서 서울시 시민이 낸 그런 금액의 절반만 떼어서 서울시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쓴다면 지금 공동세법에서 제안된 방법보다는 5.3배의 효과를 내게 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세법으로 하게 되면 현재 1700억밖에 나눠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부세법을 쓰게 되면 8962억 원을 쓸 수 있습니다. 5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재 기준에 그렇습니다. 내년이 되고 후년이 되면 재산세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종부세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효과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가 지금 거둬 들여서 조정교부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취득·등록세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이것을 50%밖에 교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 다른 시·도 예를 들면 광주시의 경우는 이것을 70%나 교부를 합니다. 70%까지는 안한다 하더라도 다른 16개 광역시·도의 평균 수준인 60%까지만 교부를 한다고 하면 4020억 정도의 재정이 생깁니다. 현재 공동세안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정인 1700억보다 2.4배나 많습니다. 더 많은 돈으로 다른 구의 재정자립을 해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훨씬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이 방법은 조세체계의 개악입니다. 왜냐 하면 하위정부에 생기는 재정 불균형은 상위정부의 재정으로 해소하는 것이 재정정책의 기본원리인 것은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당연히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지금 생긴 이 문제는 서울시가 상위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측면이 큼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가 해결을 하지 않고 그리고 서울시는 많은 재원이 있고 다른 광역시도보다 적게 교부하면서 이것을 당사자인 자치구 몇 개를 집어내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원인 제공자는 속 빠지고 피해자끼리 해결하라고 하는 그 모양새도 문제지만 이렇게 하면 재정자립을 잘 유지하고 있는 구조차도 재정 비자립으로 역지로 끌어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체계를 완전히 흔들려 놓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제가 보기에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세 번째는 나중에

는 엄청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회부된 개정안은 서울시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다른 지역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지역도 재정 격차가 서울보다 더 심각한 지역이 많습니다. 이미 아까 공성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충북의 경우, 충청도의 경우 천안시 계룡시 차이가 26배나 납니다. 서울은 13배밖에 나지 않아요, 가장 재정이 좋은 구와 재정이 나쁜 구의 차이가. 그런데 충청도의 경우는 26배가 나지요. 그리고 경북의 경우 칠곡군과 울릉군의 격차가 20배나 됩니다. 경기도도 당연히 용인시와 동두천의 차이가 18배나 됩니다. 다른 16개 광역시·도를 보면 서울보다 더 격차가 많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서 당연히 재정이 좋은 곳에서 돈을 더 내서 재정이 어려운 곳을 도와달라는 요구가 없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요구가 봇물 터지듯이 들어올 때 도저히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역시·도 간의 재정 불균형입니다. 지금 서울은 상대적으로 재정이 좋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보다 25배나 재정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5개 광역시·도에 대해서 서울시가 다 돈을 내서 도와주어야 된다고 요구를 할 때 서울시가 무슨 수로 이것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면 결국은 지자체끼리 서로 갈등하고 뺏고 뺏으려는 싸움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데 이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구구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강북과 강남 간의 무슨 감정적인 대립인 것처럼 굉장히 감정적인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 이 문제야말로 지방세와 국세,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적인 찌꺼기는 거두어 내고 냉철하고 차분하게 무엇이 가장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인지 따져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원칙에 맞고 효과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앞으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그 문제는

애써 외면하고 당장 손쉽고 당장 4개 구 쥐어뜯면 말 못 하게 막을 수 있으니까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뜻이라면 이것은 당장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 공동세 법안에 찬성하시게 되면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기초단체는 기초단체끼리, 광역단체는 광역단체끼리 갈등하고 분열하는 하향 평준화의 단초를 만드는 우를 범하시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득** 이해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환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의원**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반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반대 발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마치 공동세 법안이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법안이 아닌가 국민들이 그렇게 알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당초에 처음 대표발의 했기 때문에 이 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원래 이 법안은 199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말하면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서울시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시의 여러 구들이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이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법안입니다.

당초에는 담배소비세, 자동차세하고 재산세를 100% 교환하는 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안은 열린우리당에서 낸 안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48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에서 32명이 열린우리당이고 16명이 한나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사실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100% 바꾸게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가 중대한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깊은 논의를 한 끝에 재산세를 50%는 공동세로 해서 이것을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쓰고 나머지 50%는 각 구들이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법안을 처리하게 되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구는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의원님들로서는 강력히 반대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장께서 강남구의 어려움이 심화되지 않도록 초기 3년간은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이 이루어지고 또 강남도 큰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서울시민들이 서로 아주 화목한 가운데 다른 구들은 강남구와 서초구, 중구, 송파구의 덕을 입고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강남구에 있는 국민들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 서울 전체를 위해서 쓰인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굉장히 화목하고 고르게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법을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다 일리가 있고 좋은 의견이지만 그러나 이 법안은 한나라당이 원래 요구, 안을 낸 것이고 열린우리당에서 이 법안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체로 좋은 대안으로 행정자치위에서 만들어 낸 안이기 때문에 오늘 열린우리당 의원님들이 찬성 발언을 하시고 한나라당에서도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 지역 의원님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 모두들 찬성해 주시면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서울의 화목한, 또 아주 균형 잡힌 발전이 이루어지고 국가 전체의 발전에 모범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두모두 찬성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의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득** 김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5인 중 찬성 120인, 반대 52인, 기권 33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8인, 기권 4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7시28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19항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윤호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윤호중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구리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윤호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지원대상은 1938년 4월 1일 이후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으로서 강제동원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었던 사람과 일본국 등으로부터 노무 제공 등의 대가인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는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미수금피해자의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로 정하였습니다.

셋째, 지원 내역으로는 강제동원기간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유족에 대하여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000만 원의 위로금을,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000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장해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수정안은 생환자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수정안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반대가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 법에 제안할 수 없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의원님 단 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정안이 부결된다면 원안마저 부결시키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률안 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장복심 의원 등 4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장복심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심 의원 반갑습니다. 장복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태평양전쟁 전후 일제에 의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 하였음을 감안하여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법률안의 대안이,

첫째, 제명을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있으나 일제강점하라는 표현이 일제 식민지배의 부당성을 부각·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한국 근대사가 일제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타율성론 등 일제 식민사관을 계승하는 몰역사적인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제명을 태평양전쟁을 전후한 일제의 반인륜적·반인권적 행태를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동 법률안의 위로금 등 지원대상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위로금 지원대상을 강제동원기간 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었거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던 사람 등으로 한정하여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를 위로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그 사유를 청구권협정 경위를 볼 때 무상자급에 생환자의 몫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한일협정 예비회담 때 생존자를 포함하여 일본정부가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을 거부한 것도 우리 정부이고 협정 시 생존자를 배려하지 못한 것도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생존자를 위로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동 법률안 대안은 위로금 등 지원대상과 수준이 기대에 미흡하여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의 고통을 위로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역부족이며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와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 등 희생자관련 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시행과정에서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을 역사성을 고려하고 동 법률안의

위로금 등 지원대상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둘째, 위로금 지원대상에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를 추가하여 생존자 1인당 5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17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태평양전쟁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안을 대표발의한바 있으며 특히 117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17대 국회가 해방 후 60여 년의 오랜 숙원을 해소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후 참여정부가 국무총리 산하에 기획단을 구성하여 한일 외교문서를 공개하고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내용의 정부법안을 마련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며 존경을 포함합니다.

그동안에 소극적으로 임해왔던 역대 정부와 아주 대조적이라는 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수정안이든 대안이 됐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정안과 대안 둘 중에 하나는 꼭 통과돼서 60여 년간의 오랜 숙원이 깨끗이 매듭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친 대안을 존중하여 법률을 제정한 뒤에 후일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생존자 어르신들께서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추풍낙엽으로 매일매일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생존자들의 평균 여명을 4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시기 전에 억울함을 풀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도리라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재정형편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생존자를 포함하여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지원에 이 이상 더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협정 외교문서를 보면 한국정부는 협상 당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103만 2684명에 대해서 총 3억 6400만 달러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하였고

일본정부로부터 청구권 및 경제협력자금 성격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특히 무상 3억 달러에 의해서 도입된 원자재·시설기자재의 판매대금 조성액 1077억원 중에서 8.5%인 91억 8700만 원만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포항제철 및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에 사용하였으며 포스코의 경우 배당과 지분매각 등으로 정부에 3조 8000억 원을 갚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 법률안 대안에 의한 지원대책 소요예산은 총 4500억 원으로 이는 정부가 포스코로부터 돌려받은 3조 8000억 원의 11.8%에 해당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억울해 하는 희생자가 존재하는 한 태평양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대책은 후일 북한과 일본의 수교 시 청구권 협상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대부분 85세 이상 고령의 연로한 생존자들에게도 위로금을 지원하여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17대 국회에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십시오.

지금 방청석에서는 어르신들께서 의원님들만 믿고 노구의 몸으로 겨우 오셔서 앉아 계십니다. 마는 오늘 이후로는 60여 년간의 한과 피눈물을 우리 모두가 위로하고 어루만져서 아주 조금씩이나마 마음의 평안을 찾으실 수 있도록 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프고 외롭고 고달픈 이들을 위해 민생을 챙기는 훌륭한 의원님들로 더욱 존경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가가 왜 있습니까? 선량한 국민, 죄 없는 국민들이 그 시절에 이 나라에 태어났다는 죄 하나로 강제 징병, 징용을 당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순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진정으로 해주실 일은 저의 호소를 믿고 찬성해 주실 일이라는 것을 용기 있게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호소드리는 이 수정안이 부결되면 곧이어서 위원회 대안이 의결됩니다. 당연히 찬성해 주시겠지만 기왕 찬성해 주실 거라면 수정안을 찬성해 주십사 하고 울고 싶지만 울지 못하고 눈물 없는 호소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장복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남도 함평·영광 출신 통합민주당 이낙연입니다.

저는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으로서 그리고 요즘에는 한일의원연맹 사회문화위원장으로서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일본과 한국 정부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오늘 저는 존경하는 장복심 의원께서 대표로 제안하신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께서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일본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에 유상 2억 달러, 무상 5억 달러를 내놓았습니다. 그중에서 무상 3억 달러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돈으로 1052억 원이 조성됐고 그 돈을 가지고 1975년에야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강제동원 희생자 중에서 사망자로 파악된 7만 7000명 중에 11%인 8552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준 것이 전부입니다. 1052억 원 중에 9%인 95억 원만이 보상금에 쓰인 겁니다. 그 나머지 돈은 포항제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가 취한 조치를 보면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신청은 2년간만 받기로 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만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대상자들은 보상금을 준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정부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 문제에 임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주먹구구식으로 임했다기보다는 그 당시 정부는 보상보다 오히려 경제개발에 더 큰 관

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말 고심 끝에 좋은 대안을 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호중 의원께서 설명드린 대로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은 이렇습니다.

일제시대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강제 동원돼서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되신 분들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2000만 원, 그리고 부상당하신 분들에게 대해서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2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위로금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제에 강제 동원됐으나 건강하게 살아 돌아오셔서 지금까지 살아 계신 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규정이 없이 ‘의료지원금만 대통령령으로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에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다 하다가 건강하게 살아 돌아온 것이 왜 손해를 봐야 될 이유가 됩니까? 수정안과 대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끌려가서 건강하게 살아 돌아온 것이 잘못입니까? 손해 봐야 될 이유입니까?

그런데도 1975년에 생존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지 않은 이유는 이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생존자에 대해서 지원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도 이거라고 합니다.

첫째 이유는 1975년 당시에도 생존자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뺐다고 합니다. 그러면 1975년에는 왜 대상이 아니었느냐,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거였다고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에 동원됐던 자국 국민들에게 보상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보상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준해서 우리 한국 정부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끌려갔다 건강하게 살아 돌아오신 분은 지원을 안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걸 여러분이 납득하실 수 있으실습니까?

일부에서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생존자들을 도와드리면 6·25 참전용사들 중에 살아 계시는 분들이 모두 뭔가를 요구할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강제동원 피해자 중에서 생존자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당시에, 1975년 보상을 실시할 당시에 정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

니다. “국민소득이 1인당 2000불이 되면 여러분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2만 불을 앞두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라도 정부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 2005년에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었습니다. 그 당시 보면 강제동원 피해자 중에 생존자들의 평균연령이 80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 생존자들의 기대 잔여수명, 기대여명이 4년으로 계산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2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잔여수명으로 기대되는 기간은 2년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 당시에 신고된 생존자가 4만 명이었습니다만 지난 2년 사이에 35% 정도가 사망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 계시는 분은 2만 6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더구나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이 되면 생존자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통계를 기초로 본다면 만약 장복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우리가 그분들께 지원금을 드린다 그러면 추가로 소요될 예산은 1300억 원 정도입니다. 많다면 많은 돈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30년 전에 했던 약속을 이제라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60여 년 동안 못 했던 일을 이제라도 하는 그런 일이라면 결코 많은 돈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노인들이 더 많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국회의 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0여 년 전에 경제개발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것을 이제라도 하십시오.

여러분, 장복심 의원이 설명하신 수정안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이상득** 이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호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부평갑 출신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입니다.

준비는 더 해 왔는데 방금 우리 이낙연 의원님께서 일제에 유린당하다 구사일생으로 귀환한 연로한 생존자들도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가 회복되도록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동의를

하면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는 법 제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라는 명칭보다는 태평양전쟁기 일제의 반인륜적·반인권적 행태를 집약한 '태평양전쟁 희생자'라는 명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하가 포함된 법 제명보다는, 이 법 제명으로는 희생자들에게 명예회복보다 오히려 수치와 굴욕감을 줄 수 있고 우리 정부 스스로도 희생자를 일제에 종속시켜 지원금을 준다는 비난을 후세에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계 일각에서도 일제강점하라는 표현은 일제에 대한 종속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역사성에도 위배된다 그래서 용어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바른 역사 용어의 사용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상정된 이 장복심 의원의 수정안은, 또 행정자치부의 대안은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희생자의 입장에서 아픔을 치유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꼭 통과시켜 주셔서 태평양전쟁 희생자분들의 얼마 남지 않은 여생에 크나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심 의원 등 46인이 발의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14인, 반대 20인, 기권 53인으로서 장복심 의원 등 46인이 발의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21.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택 의원 대표발의)(이규택·김기현·김정훈·이군현·엄호성·박세환·신상진·박상돈·김부겸·황우여·고조홍·박찬숙·김태년·유정복·박재완·권선택·허태열 의원 발의)

(17시55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20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권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권경석 존경하는 국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창원갑 출신 권경석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경사지역 안전점검과 붕괴위험지역의 지정·관리,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그리고 붕괴위험요

인 제거가 어려울 경우에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규식 의원과 이성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소방공제회 감사의 임시대의회회 소집요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순직 또는 공상 퇴직 소방공무원 유족 등에 대한 복지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업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상해를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반대 1인으로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한국고전번역원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유기홍 · 이성권 · 박재완 · 강창일 · 정성호 · 이계경 · 김교홍 · 이경숙 · 안민석 · 이미경 · 김재윤 · 김영춘 · 이광철 · 이인영 · 최재천 · 정의용 · 서혜석 · 민병두 · 정청래 · 백원우 · 김낙순 · 박병석 · 우제창 · 제종길 · 김재홍 · 홍미영 · 윤원호 · 지병문 · 정봉주 · 최순영 · 강기정 · 임해규 의원 발의)

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장 제출)

2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8시03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23항 한국고전번역원법안, 의사일정 제24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유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유기홍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관악갑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고전번역원법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고전번역원법안은 고전문헌에 대한 체계적인 번역을 활성화하여 민족의 우수한 문화 역량을 계발하고 한국학 연구의 기초를 튼튼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3월 1일로 되어 있어서 1·2월생 학부모들이 취학시기를 일부러 늦추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을 1월 1일로 변경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유치원 교사도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통해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주변의 문방구 및 슈퍼마켓 등에 설치되어 학생들의 여가 선용과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니게임기를 동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의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 및 위원회안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고전번역원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4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한국고전번역원법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1인, 기권 3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으로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2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28.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영숙·이재오·김교홍·이미경·정봉주·최순영·강기갑·현애자·서갑원·심상정·안홍준·임인배·임해규·김애실·안명옥·김성조·진수희·박찬숙·권경석·정종복·안경률·김양수·허천·황진하·배일도·김명주·천영세·권영길·민병두·유기홍·이군현·이영순·안민석·이원복·주호영 의원 발의)

(18시10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26항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7항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8항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임해규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임해규 교육위원회 임해규임

니다.

의장님께서 힘들여 읽으신 그 긴 3개의 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주호 의원과 유기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주호 의원, 김선미 의원, 변재일 의원, 김기현 의원, 유정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한편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법안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기술지주회사가 매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익금은 대학의 연구활동에 주로 활용케 하여 대학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제도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에 있어서 인종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여건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을 강화하였고,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였으며,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성을 보호하고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4년 제정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등 미임용등록자에 대하여는 특별정원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교육대학에 특별 편입학한 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정원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지 않아 미임용자 간에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교대 특별편입 미임용자의 경우에도 820명의 특별채용 정원을 허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른 초등특별정원 확보에 따른 기존 초등정원 증원은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법안인 만큼 여러 선배님들이 꼭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이상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9인 중 찬성 179인으로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상득 부의장, 임채정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임채정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8인 중 찬성 187인, 기권 1인으로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8시16분)

○의장 임채정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를 오늘 의사일정 제56항 및 제57항으로 각각 추가 상정하여 제29항에 앞서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56항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노현송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노현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노현송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5월 2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정당활동 및 정치자금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정치관계법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동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의 심사·처리를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 내에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며, 셋째,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은 2007년 12월 31

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를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무기명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57.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18시21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57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선거는 국회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김석준 의원, 김애실 의원, 김재윤 의원, 백원우 의원, 류근찬 의원, 김낙순 의원, 오영식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기노진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명란이라고 표시된 란 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은 각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시거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외의 의원 성명을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8시25분 투표개시)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정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8시40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18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8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기타 득표수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8표 중 161표를 얻은 원혜영 의원이 국회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원혜영) 인사

(19시01분)

○의장 임채정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원혜영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원혜영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은 한정된 국가 재원이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꼼꼼히 심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임채정 의장, 이용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올해는 국가재정법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해이자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제도, 디지털 예산회계제도 등 4대 재정 개혁 과제를 추진해 온 지 3년차가 되는 해로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것에 대해 큰 영광과 더불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 예결위원장으로서 우리 예결위가 소모적인 정쟁의 장이 아니라 나라 살림에 관한 정책 대결의 장이 되어 국가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희 원혜영 위원장님 축하합니다. 멀리서 축하합니다.

29.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정청래·김재윤·강혜숙·이광재·김희선·윤원호·이광철·지병문·우상호·박찬숙·이재웅·장윤석·정종복·이재오·김학원·전여옥 의원 발의)
(19시03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최구식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최구식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최구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기관으로서 박물관과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이 증대됨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기능을 명시했습니다.

또 박물관협회의 허가 요건 중 행정청이 광범위하게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운용될 여지가 있는 공공이익 증진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으로 최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기본법 부칙은 문화관광부장관이 2006년 12월 31일 폐지된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잔액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직접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문제의 부칙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별도의 세입·세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문화관광부장관이 직접 기금 잔액을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최구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을 표결할 순서입니다. 마는 지금 현재 재석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직 재석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상정 후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2.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3.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한병도·이기우·정갑

윤·이경숙·한광원·최철국·김우남·최인기·유선호·류근찬·문석호·원혜영 의원 발의)

34.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9시11분)

○부의장 이용희 의사일정 제31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2항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3항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최규성 의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장대리 최규성 존경하는 이용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김제·완주 출신의 최규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김우남 의원, 조정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였는바,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개보수나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도록 하였고,

둘째, 농업기반시설의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시기를 “착공 후 1년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셋째,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로 이양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는,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였는바,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농업유전자원을 종자·영양체·유전자·세균·진균 또는 바이러스 등 농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자원으로 정의하였고,

둘째,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 보존·관리 방안 및 농업유전자원의 분양승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셋째, 국내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 발생 시 사전주의 원칙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망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현재 산림청장이 집중호우 등의 기상 여건에 따라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난 상황에 대한 추진 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는,

첫째, 산림조합중앙회가 자금을 지원받는 산림조합과 체결하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에 자산건전성의 목표 수준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둘째,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대상에 이해관계 있는 조합의 현직 임직원뿐만 아니라 과거에 임직원이었던 자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최규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5. 航路標識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6. 內水面漁業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7. 원양산업발전법안(이영호 의원 대표발의)
(이영호·장영달·김진표·김동철·유기홍·정봉주·조일현·윤원호·김충환·김무성·이상열·김재윤·이기우·유승희·윤호중·문석호·김형오·정장선·장향숙·강혜숙·

김종률·이상득·서상기·허태열·강길부·박명광·홍재형·박찬석·송영길·조성래·김춘진·최철국·선병렬·이상경·노영민·홍미영·한광원·김우남·최규성·박영선·심재덕·문병호·최재성·김성곤·원혜영·정갑윤·우원식·조정식·조경태·이목희·이강두 의원 발의)

38. 소형선박저당법안(정부 제출)

3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4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19시16분)

○부의장 이용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5항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6항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7항 원양산업발전법안, 의사일정 제38항 소형선박저당법안, 의사일정 제39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이영호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장대리 이영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강진·완도 출신 지역구 이영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위성항법정보시스템 및 특수번호표지와 같은 첨단화·과학화된 항로표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를 보존·관리하고 항로표지의 변천 과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로표지와 관련한 박물관 및 해양문화 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위생관리, 경영기법 및 양식기술 등의 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과 시장·군수·

구청장이 내수면 신고어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양산업발전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1957년 ‘지남호’가 인도양에 첫 출항하여 상업적 시험조업을 실시한 지 5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1960년·70년대 대한민국의 주력사업인 원양어업은 오대양 육대주를 상대로 외화 획득을 하였던 바, 이는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주요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자금 창구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는 싼 값에 단백질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자원량 감소뿐만 아니라 연안국의 자원 자국화, EEZ 선포, 국제기구 규제 강화 등으로 조업 가능한 어장이 날로 축소되었으며 선박 척수도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원양업계는 고임금과 고유가 등 어업경비는 날로 치솟는 가운데 어선은 노화되고 있는 반면, 어가는 정체되고 WTO·FTA 등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폭발적인 수입 증가 등으로 우리 원양업계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양어업을 정책적 배려 없이 여전히 민간 주도로 방치할 경우 자본과 기술을 앞세워 해외시장을 누비고 있는 일본이나 저비용으로 신흥원양어업 강국에 들어선 중국 등 경쟁국 사이에서 조업시장과 시장지배력을 상실하고 경제적 이익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2001년부터는 수산물의 무역역조가 시작되었으며 공식통계만으로도 수입가 기준 27억 불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원양어업이 비록 과거의 영화는 찾기 어려울지라도 오대양 육대주에 있어 우리 과학기지의 역할을 하면서 최소한 국가경제의 한 축을 유지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산업의 역할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전 세계의 자료수집 또한 필요한 산업으로서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제 이러한 실정을 감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 사항 중에 업계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 수를 20인까지로 증원하는 한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과반수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형량을 다양화하여 위반행위와 형량 간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선박저당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저당권등록 수수료를 채권가액에 따라 차등 징수토록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민 등의 편익을 증진시켰고, 영세선박사업자 등에게 금융 혜택을 주려는 이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법률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에서 앞당겨 “2008년 7월 1일”로 시행토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해양심층수의 자원적 특징인 무한성을 감안하여 취수량과 관련된 제한규정을 완화하였고,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련한 특혜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취수해역별로 복수의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면허의 유효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민영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해양심층수 개발업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영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무인도서에 대한 정의규정상의 표현을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였고, 무인도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업자가 당초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이영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4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윤성 의원 대표발의)(이윤성·이명규·곽성문·김성조·박순자·원희룡·이성권·김태환·조정식·정장선 의원 발의)

43.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박상돈·이광철·서갑원·민병두·백원우·이광재·이화영·신상진·우상호 의원 발의)

(19시23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2항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노영민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장대리 노영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청주 흥덕을 출신 산업자원위원회 노영민 의원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최철국 의원과 조정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장설립 대행업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장설립대행업무 처리 지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명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자동승인제도를 도입하였고,

둘째, 장기임대 전용산업단지 지정받은 경우 입주자격 등 장기임대 전용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입주계약 해지 후 재산의 처분·양도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산업용지를 합목적적으로 사용하고 공장에 대한 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윤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 기술협력,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육성, 연구시설·장비의 이용 알선과 활용 등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술통계 작성에 대한 위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육성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인력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방법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개선·보완하며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인력개발진흥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중소기업인력개발진흥원의 설립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우선적으로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시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법 체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노영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4.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5.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시28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국민

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5항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6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충환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충환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충환 의원입니다.

먼저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정형근 의원, 김효석 의원, 이종걸 의원, 현애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키로 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연금급여 수준을 현행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2008년 50%로 인하하고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에 40%로 유지하면서도 보험료율은 현행과 같이 기준소득월액의 9%를 유지하고 기존 수급자의 기존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보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현애자 의원, 박재완 의원 및 강기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초노령연금법 등을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치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키로 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을 현행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둘째, 부부 공동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액의 감액비율을 16.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며,

셋째, 연금의 병급 조정규정을 삭제하여 기초노령연금과 다른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연금수급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현행법에서 2008년 7월 1일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60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한 것 외에 2009년 1월 1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 규정하며,

다섯째,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는 대안을 채택하면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따로 마련하도록 한다는 부대결의를 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60세 미만의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국민연금법·기초노령연금법·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김충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과 45항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일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 의원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제출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법률안, 이것이 국민 노후생활과 또 노령자 보호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법이므로 참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 목적이나 운영 방식에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국민 간의 많은 분란과 우리가 이 제도를 일찍 도입했던 서구 사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우리 사회에 끌어들이는 그런 우를 범할 것 같아서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단말기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 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급여 수준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던 돈을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재정 악화 방안을 마련하고 출산율 제고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하여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며 군 복무로 인한 소득 상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 중 일부를 노령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한편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며 이 중 연금 수급에 있어서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는 등 현행 국민연금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획기적으로 개선 보완하자, 이것이 개정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민연금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국민연금법은 도입 목적에 그 도입의 취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후생활을 보장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급하던 그 지급률에 곱하는 산식을, 1.08이었던 산식을 1.35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지급되는 것보다도 45%를 적게 주자는 데 현재 이 법의 골자가 들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노후생활이 과연 보장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이 법안은 지금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입 목적이 재정의 안정에 있느냐 노후생활 보장에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점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 나타나 있는 규정을 보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민 앞에 선서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대통령이 딱 되면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고—그 다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퇴시키는 게 아니라 증진시키는 것을 노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의 책무라고 그러면 현재보다 나은 상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내야지 있는 것을 삭감하는 것, 그것이 바른 제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직무 유기이거나 능력과 자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바로 이는 현재까지 약속했던, 국민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

제에 국민연금에 대한 본래의 목적에 맞는 제도를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제도는 처음 도입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단계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저는 지난 2006년도 국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과 같은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이렇게 제출된 데 대해서 저는 정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돈을 내서 돈을 낸 사람만 보장하는 제도이니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정말로 소득이 없고 이후에 질병에 걸렸거나 그런 사람을 보호하자는 국민연금의 본래적 취지라면 이제 국가재정으로 운용할 때가 됐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이 국민연금을 희망자에 한해서 퇴직금 중간정산 하듯이 정산을 하고 이후에 국가재정에 의해서 국가가 보호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재정으로 연금 수혜 혜택, 노후대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현재의 재정 여건 내에서도 지금 현재 국가가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

저는 금전적으로 다 따져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도외시하고 현재 재정 안정이라는 목표하에 지금 지급되고 있는 제도를 저렇게 후퇴시키는 것은 저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국민 기만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의 책무를 다 못 하는 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표면적으로는 노후생활 보장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제도는 복잡하기 때문에 내용으로 들어가면 끝도 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새로운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아주 시급한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기 정부에 넘겨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진 속에서 개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반대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말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용희 배일도 의원님 시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의원입니다.

반대토론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유감스럽게도 이 본회의장 자리에 없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은 오늘 사립학교법 개악을 막아 내기 위해서 지금 교육상임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17대 국회의 유일한 개혁 법안입니다. 이 개혁법안을 우리 손으로 다시 붕괴시킨다면 우리 17대 국회는 역사적인 과오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정과 비리 없는 그런 학원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렵게 만든, 어렵게 몸싸움까지 해서 만든 유일한 개혁 법안을 다시 몸싸움까지 해서 개악시키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민연금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회가 얼마나 졸속으로 연금법을 다루고 있는지를 규탄하고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연금 개혁에서 사회적 합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입자들의 다수인 국민들은 개정안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국민연금법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법의 문제를 크게 지적을 해 보면 먼저 국민연금 급여가 60%에서 40%로 너무 급격히 인하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정 안정화가 시급하다라고 하더라도 그에 걸맞은 아무런 대책 없이 급격한 인하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연금 개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이 기대에 못 미치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20년 후에야 급여율을 10%로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인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60%에서 70%로 제한된 것, 그리고 장애기초연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특히 개정안이 법제적으로 지닌 심각한 문제점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졸속적으로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가입자를 기만하는 여러 항목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을 앞으로

10%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를 위한 법적 장치가 개정안에는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급여율 삭감은 매년 0.5%씩 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기초노령연금의 상향 방식은 개정안에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연금제도 개선위원회에서 이를 정하겠다고 합니다. 그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17대 국회 종료 시점에서 구성되는 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삼척동자도 다 알 것입니다. 결국 기초노령연금을 계속 5%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개정안은 2009년부터 노인 7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해인 2010년도에는 70% 그 이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70%는 2009년에만 적용되고 그 이후는 계속 지급 대상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장관이 50%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담긴 2009년 지급 대상 70%는 바로 노인 모두를 기만하는 그러한 정치적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로 개정안은 내년에 5% 기초노령연금 약 9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난 1주일 전 6월 27일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은 본법에서 기초노령연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9만 원이 아니라 2만 원 또는 4만 원을 받는 노인들이 다수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소득액과 기초노령연금액이 소득기준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기준액이 50만 원이면 소득이 48만 원인 노인에게는 2만 원만 지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 지역에서 어르신들께 9만 원을 드리겠다고 약속한 그런 의원님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1월에는 그 금액이 2만원에 불과한 어르신들이 항의하는 그런 결과가 많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이 이 개정안은 굉장히 허술하게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5년마다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년이 바로 그 5년 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정부는 이미 이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내년 3월 연금 개혁 시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누더기로 연금 개혁을 논의할 바에는

차라리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듣고, 국민의 선택을 묻고 내년에 2차 연금 개혁과 통합해서 다루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개정안은 연금의 주인인 가입자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정치권이 연금 개혁을 누더기로 만들고 정략의 도구로 만든 법안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희**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4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단병호·맹형규·배일도·신상진·우원식·이경재·이상배·정진섭·제종길·조성래·한선교 의원 발의)

4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정부 제출)

(19시46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안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안홍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산을 한나라당 출신 안홍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 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의 인정, 품질검사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서 수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품질·등급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곧바로 다시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 취소 후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 등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 등으로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2조제9호 “환경친화적 지역특성화산업 지원”을 현행과 같이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방식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 등으로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에 관한 사항 중 동 협회의 업무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이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보궐위원에 대해서도 2년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안홍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1. 公認勞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9시50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고희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勞動委員長代理 高羲善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화성 출신 환경노동위원회 고희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인노무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관련 업무를 심의하는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당해연도 시험 선발 인원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개인 노무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금지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공인노무사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공인노무사의 위법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하여 공인노무사회가 자율적인 규율을 통하여 공익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회의 설립과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고희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오늘 회의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3. 貨物유통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

교통위원장 제출)

54. 流通團地開發促進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9시53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4항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이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이진구 존경하는 이용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이진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및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적으로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국제적인 물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물류 관련 정책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 물류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둘째,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및 민간위원 등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물류 협력체계의 구축 등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물류시설 관련 법령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서 물류시설의 체계적 개발이 어렵고 개발경쟁으로 인하여 중복투자가 발생함에 따라 물류시설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하여 물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고 합

리적으로 배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교통부장관이 물류시설에 대한 계획적 공급, 지역별·규모별·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였고,

둘째, 현재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화물터미널 관련 규정을 이 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유통단지 안의 지원시설에 따라 이용자 또는 지원시설 건설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이용자 및 원인자 부담금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 존 함)

○**부의장 이용희** 이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9시56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홍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장대리 홍미영** 존경하는 이용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홍미영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계안 의원과 김애실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같은 제명의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체교사를 원

할히 채용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의 인건비에 대한 비용 보조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영아 또는 장애아 이용 보육시설의 운영정지에 관해서는 이에 갈음해서 보육시설의 아동정원 감축 또는 모집정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에는 보육시설장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제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 존 함)

○**부의장 이용희** 홍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의결을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29항부터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실 것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천천히 하세요, 시간 있으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0인 중 찬성 158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0인, 기권 2인으로서 농
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8인, 기권 1인으로서 농
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망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1인, 기권 2인으로서 사
망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0인, 기권 2인으로서 산
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해양수
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향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3인, 기권 1인으로서 향
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기권 2인으로서 내
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양산업발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서 원양산업발전
법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형선박저당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5인, 기권 1인으로서 소
형선박저당법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3인, 반대 1인, 기권 4인
으로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9인 중 찬성 167인, 기권 2인으로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9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8인 중 찬성 166인, 기권 2인으로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1인 중 찬성 154인, 반대 5인, 기권 12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2인 중 찬성 158인, 반대 5인, 기권 9인으로서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2인 중 찬성 170인, 기권 2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번 투표만 끝나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 갑자기 또 그래?

정식으로 요청을 해 봐요. 정식으로 해 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5인 중 찬성 173인, 기권 2인으로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교섭단체대표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잠시 본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9분 회의중지)

(23시14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앞에서 의결을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49항부터 계속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0인 중 찬성 177인, 기권 3인으로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2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6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인으로서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4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8인 중 찬성 186인, 기권 2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 나와 계신 의원님들!

이 정도 되면 충분히 반대의사 표시된 것 같은

데 의사진행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의석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하는 의원 있음)

(「이제까지 잘 해 오셨는데 마지막에 오점을 찍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오점을 찍든 안 찍든 어쨌든……

(「불법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불행인지 행인지 모르지만 그 순서가 내 순서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 방법이 없잖아……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23시51분)

○부의장 이용희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들 간의 합의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58항~제60항으로 각각 추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부의장 이용희 의사일정 제58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존경하는 이용희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정부가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인 법률 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중간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진표 의원 등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의원 김진표 의원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얼굴 들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왜 그러세요?

(「개악을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이게 법안이야?」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어떻게 얼굴 들고 나올 수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을 개악이라고 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부의장 이용희 지금 회의장 상황으로 인하여 제안설명을 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은 단말기에 있는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해요!」 하는 의원 있음)

(「이게 법이야? 이게 무슨 법이야!」 하는 의원 있음)

(「이게 국회예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저버리고, 이게 개혁이야?」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김진표 의원 등이 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 187인 중 찬성 149인, 반대 18인, 기권 20인으로서 김진표 의원 등이 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9. 私立學校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영 의원 대표발의)(이은영·민병두·정봉주·강봉균·최철국·오제세·김현미·이영호·노웅래·

정성호 · 김교홍 · 박기춘 · 선병렬 · 주승용 · 최성 · 문병호 · 변재일 · 장경수 · 우제창 · 최용규 · 이근식 · 유기홍 · 송영길 의원 발의)
(23시54분)

○**부의장 이용희** 의사일정 제59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법 개악 반대한다! 관둬라, 관둬!」 하는 의원 있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렇게 운영을 해서……」 하는 의원 있음)

(「뭐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이은영 의원** 교육위원회의 이은영 의원입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장내 소란)

○**부의장 이용희** 지금 회의장 상황으로 인하여 제안설명을 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안 설명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중간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주영 의원 등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주영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의원** 사립학교법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사립학교법 수정안은 원내 3당이 합의한 안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17대 국회 단면을 적나라하게 국민 앞에…… 잘한다, 잘해!」 하는 의원 있음)

(「우리당은 한나라당하고 합당해라, 합당해!」 하는 의원 있음)

(「뻔뻔하게 이려고서 대선 치르고 또 정권 잡겠다고……」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용희** 그러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의원 등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6인 중 찬성 143인, 반대 26인, 기권 17인으로서 이주영 의원 등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0.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시57분)

○**부의장 이용희** 의사일정 제60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중간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그러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다들 법조인 출신들 계시잖아요? 이 법이 정말로 이렇게 통과되어도 되는 법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8인 중 찬성 160인, 반대 6인, 기권 22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리고 이 안건들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

.....

특별위원장 투표 결과

위원회	투표 결과			
예산결산 특별	원혜영 161	이병석 6	김진표 2	
	홍문표 1	신중식 1	제종길 1	
	기권 3	무효 13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79인)

강기정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재경	김재홍
김정권	김진표	김춘진	김태홍
김태환	김학원	김현미	김형주
김홍업	김희선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맹형규	문병호	문희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명욱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유인태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규택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화영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전병현	전여욱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현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최구식	최규식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허천
홍재형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이상경 정화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1인)

강기정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세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재경	김재홍	김정권	김진표
김춘진	김태홍	김태환	김학원
김현미	김형주	김홍업	김희선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맹형규	문병호	문희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명욱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유인태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규택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상배	이명규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상열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시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윤석	전병현	전여욱	
정갑윤	정두언	정문현	

이영호 이유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화영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최구식 최규식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허천 홍재형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권철현 김영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
 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85인)

강기정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재경 김재홍
 김정권 김진표 김춘진 김태홍
 김태환 김학원 김현미 김형주
 김홍업 김희선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맹형규 문병호
 문희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유인태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규택
 이근식 이명규 이방호 이상경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유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화영 임인배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허천 홍재형 황우여
 황진하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88인)

강기정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재경 김재홍
 김정권 김진표 김춘진 김태홍
 김태환 김학원 김현미 김형주
 김홍업 김희선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희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김성조	김송자	김영덕	김영숙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배기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김원기	김재경	김재홍	김정권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김정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홍
신국환	신명	신학용	심대평	김태환	김학원	김현미	김형주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김홍업	김희선	나경원	남경필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노영민	노응래	맹형규	문병호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문희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우윤근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박명광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유인태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박찬숙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이규택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학용
이방호	이상경	이상배	이상열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영호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우윤근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이주호	이진구	이화영	임인배	유인태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이규택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이방호	이상경	이상배	이상열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용희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재웅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순형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이화영	임인배	임태희	임해규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전병헌
차명진	채수찬	최경환	최구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최규식	최성	최연희	최용규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의용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섭
허천	홍재형	황우여	황진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기권 의원(2인)

안상수 이시중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77인)

강기정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반대 의원(5인)

류근찬 박상돈 우원식 정성호

정진석

기권 의원(6인)

손봉숙 심대평 이인영 정청래
조경태 최재천

○商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7인)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송자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주	김홍업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희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우
박찬석	박찬숙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기홍	유시민	유인태	윤건영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상경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허천	홍재형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박세환

○住宅賃貸借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202인)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세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주	김홍업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희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우	박찬석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기홍
유시민	유인태	윤건영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상경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이명규 이상경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연 정몽준
 정문헌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조경태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허천 홍미영 홍재형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한선교

(한선교 의원석 버튼 조작 착오. 실제 투표 의원 202인, 기권 의원 없음)

문희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기홍
 유시민 유인태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상경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연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성태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허천 홍미영
 홍재형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송영선

(송영선 의원 버튼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08인, 기권 의원 없음)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3인)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재섭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207인)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영세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주 김홍엽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강공성 고곽성 고권경
 권영세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주
 김홍업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희회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손봉숙
 송영길 신국환 신명철 안경률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홍준
 안명옥 안민석 안영근 오영식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기준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기홍 유시민 유인태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상경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시중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해봉 이해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전병현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문현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진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허천홍 미영
 홍재형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김성조

기권 의원(5인)

권철현 박세환 선병렬 송영선
 정화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207인)

장기정 강길부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강공성
 곽성문 권경석 권영세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주
 김홍업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희회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철
 신상진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상경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전병현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허천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이용희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상경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용희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해봉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전병현	전여옥	전재희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한광원	한병도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4인)
김현미 이원영 임종인 최철국

기권 의원(3인)
김영주 이영호 정갑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3인)

강기정	강길부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영세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재윤	김재홍
김정훈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주	김홍업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학진	문희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6인)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홍길

고 회 선 공 성 진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영 세 권 철 현 김 교 홍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병 호 김 부 검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흥 업 김 희 선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류 근 찬 문 병 호 문 학 진 문 회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기 춘 박 명 광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국 환 신 명 신 상 진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덕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윤 근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승 회
 유 시 민 유 인 태 유 필 우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이 상 경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승 회 이 시 중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웅 이 재 창
 이 중 구 이 주 영 이 진 구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중 인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의 용 정의 화 정 장 선 정 중 복
 정 진 석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정 회 수 정 제 종 조 경 태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허 천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황 우 여 황 진 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1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조 홍 고 흥 길
 고 회 선 공 성 진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영 세 권 철 현 김 교 홍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병 호 김 부 검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흥 업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병 호
 문 학 진 문 회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기 춘 박 명 광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승 환 박 찬 석 박 진 박 찬 석
 배 기 선 서 재 관 서 상 기 서 재 관
 송 영 길 신 명 신 상 진 심 재 철
 안 상 수 안 상 수 양 형 일 우 원 식
 유 승 회 윤 두 환 이 강 래 이 계 진
 이 낙 연 이 상 열 이 시 중 이 은 영
 이 재 창 이 해 봉 임 종 석 장 경 수
 전 여 옥 정 두 언 정 성 호 정 중 복
 정 화 원 조 성 래 조 정 식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영 이 재 웅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구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중 인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정 희 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허 천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박 세 환 이 인 기 최 재 천

신 명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덕
 심 재 철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윤 근 유 기 준 유 승 회 유 시 민
 유 인 태 유 필 우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군 현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병 석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인 기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구 이 혜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태 희 임 해 규 장 복 심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형 근 정 화 원 정 희 수
 조 경 태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채 일 병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용 규 최 철 국 한 광 원 허 천
 홍 문 표 홍 재 형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4인)

강 성 중 강 창 일 김 영 주 김 원 웅
 김 재 윤 김 종 인 김 현 미 박 찬 석
 이 경 숙 이 상 경 이 은 영 임 중 인
 정 몽 준 정 청 래
기권 의원(23인)
 강 기 정 강 혜 숙 김 낙 성 김 선 미
 김 재 홍 류 근 찬 민 병 두 박 성 범
 박 세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이 광 철
 이 상 민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인 영
 이 해 봉 장 경 수 정 성 호 제 종 길
 최 연 희 최 인 기 최 재 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176인)

강 길 부 강 재 섭 고 경 화 고 조 흥
 고 흥 길 고 회 선 공 성 진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영 세 권 철 현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재 경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룡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흥 업 김 회 선 김 회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웅 래 노 현 송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박 기 춘 박 명 광 박 상 돈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숙 박 회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78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성 중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흥 길
 고 회 선 공 성 진 광 성 문 권 경 석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덕 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홍엽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응래 노현송 류근찬 문석호
 문학진 문희범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서상기 손봉숙 송영선 신명철
 신상진 신중식 심대평 심재철
 안명옥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기홍 유인태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해봉 이해훈 이화영 임중인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진병헌 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순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허천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7인)

김낙순 민병두 서갑원 선병렬
 이경숙 이은영 정청래

기권 의원(16인)

고조홍 김선미 김영주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현미 박영선
 백원우 서재관 안민석 오영식
 유승희 유시민 이상경 이종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196인)

강기정 강길부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곽성문 권경석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오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응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범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심대평 심재철
 신중식 심대평 심재택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광철 이명규
 이규택 이근식 이상배 이석현
 이병석 이상경 이시종 이용희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재웅
 이은영 이인기 이재오 이진구
 이재창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이해훈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성호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조성래	조순형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조정식	주성영	지병문	진영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최규성	최규식	최인기	최재천
조성래	조성태	조순형	주성영	한병도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반대 의원(52인)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최구식	강성종	고희선	공성진	김기춘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김기현	김덕룡	김병호	김성조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김송자	김애실	김영덕	김영주
한광원	한병도	허천	홍문표	김종인	김학송	김학원	류근찬
홍미영	홍재형	황우여	황진하	맹형규	박계동	박상돈	박성범
반대 의원(7인)				박승환	박찬숙	심대평	심재덕
강성종	김종인	배일도	이상민	심재철	안상수	엄호성	유기준
이원영	주호영	최경환		윤두환	이강두	이경재	이계경
기권 의원(3인)				이계진	이근식	이상배	이성구
박세환	이영호	이인영		이승희	이인기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진구	이혜훈	임해규
				전여옥	정진석	주호영	진수희
				차명진	최병국	홍문표	황진하
				기권 의원(32인)			
				고경화	고조홍	권경석	권철현
				김명자	김석준	김영선	김재경
				김태환	남경필	박재완	박형준
				배일도	변재일	서상기	서재관
				송영선	안홍준	유필우	이경숙
				이원복	이해봉	임태희	장윤석
				정갑윤	정희수	주승용	채수찬
				최구식	최연희	허천	황우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120인)

강기정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권영세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주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양수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세환	박영선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명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안민석	양승조	양형일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윤원호	윤호중
이계안	이광철	이군현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열
이석현	이시종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전병헌

기권 의원(32인)

고경화	고조홍	권경석	권철현
김명자	김석준	김영선	김재경
김태환	남경필	박재완	박형준
배일도	변재일	서상기	서재관
송영선	안홍준	유필우	이경숙
이원복	이해봉	임태희	장윤석
정갑윤	정희수	주승용	채수찬
최구식	최연희	허천	황우여

(이상득 의원석 버튼 조작 착오. 실제 투표 의원 204인, 기권 의원 32인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98인)

강기정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희선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영세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명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대평 심재덕 심재철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시중 이원복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조성래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재천 한병도 허천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4인)

강성종 박계동 이경숙 이인영

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장복심 의원 등 46인 발의)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14인)

강기정 강성종 강창일 고경화
 고조흥 고희선 공성진 광성문
 권영세 권철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송자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원웅 김재윤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홍
 김대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민병두 박계동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민석 양형일
 우상호 우윤근 유선호 유필우
 윤원호 이강두 이경재 이규택
 이계안 이계진 이균현 이상경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원영
 이상득 이상열 이재오 이재웅
 이윤성 임종석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조성래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영 채수찬 채일병
 최규식 최연희 최인기 허천
 홍문표 황우여

반대 의원(20인)

권경석 김명주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원기 김정권 김학원
 박세환 송영선 신명안 안홍준
 원혜영 유기준 이계경 이인기
 정진섭 진수희 차명진 최규성

기권 의원(53인)

고흥길 김기춘 김기현 김명자
 김영춘 김재경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태년 김학송 김희선
 남경필 박기춘 박상돈 박진
 박찬석 박형준 백원우 변재일

서혜석 안명옥 안상수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유시민
 유인태 윤두환 윤호중 이경숙
 이기우 이목희 이상배 이승희
 이은영 이재창 이종구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임인배 장영달
 장윤석 정동채 정의용 주성영
 최구식 최병국 한병도 홍재형
 황진하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이해훈 임인배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병현 전여옥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현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조성래 주성영 주호영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한병도 허천 홍문표 홍재형
 황우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73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원기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민병두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시민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반대 의원(1인)

박세환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79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송자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민병두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배기선 배일도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시민
 유인태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 균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성 구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혜 훈 임 인 배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여 옥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희 수 조 성 래
 주 성 영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회
 최 인 기 한 병 도 허 천 홍 문 표
 홍 재 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원 혜 영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81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흥 고 흥 길 고 희 선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철 현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권
 김 종 룡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응 래 노 현 송
 맹 형 규 문 병 호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둔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속 박 형 준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재 관
 선 병 렬 손 봉 속 송 영 선 신 명
 신 상 진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시 민 유 인 태 유 필 우
 윤 두 환 윤 원 호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속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규 택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성 구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혜 훈 임 인 배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여 옥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희 수 조 성 래 주 성 영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회 최 인 기 한 병 도
 허 천 홍 문 표 홍 재 형 황 우 여
 황 진 하

○한국고전번역원법안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64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고 조 흥 고 흥 길 고 희 선 광 성 문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철 현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권
 김 종 룡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학 송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희 정
 김 형 주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응 래 노 현 송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둔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찬 석 박 찬 석 박 찬 속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명철 신상진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인태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조성래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영 채수찬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한병도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2인)

박재완 박형준

기권 의원(5인)

고경화 이윤성 이한구 정문헌
 차명진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용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상진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인태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미경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인배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전병헌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조성래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영 차명진 채수찬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한병도 허천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황우여

기권 의원(3인)

윤두환 전여옥 황진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71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광성문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7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정권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문병호	문석호	민병두	박계동	김영춘	김용갑	김원기	김원웅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진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학원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상기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송영길	송영선	신명	신상진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명옥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우윤근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선병렬
유선호	유인태	유필우	윤두환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명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신상진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안명옥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미경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이병석	이상경	이상배	이성구	유기홍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원복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이기우	이낙연	이병석	이상경
이혜훈	임인배	임해규	장경수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승희
장복심	장윤석	진병현	진여옥	이시종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현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인배
정희수	조성래	주성영	주승용	임종석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주호영	지병문	진영	차명진	장영달	장윤석	진병현	진여옥
채수찬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현
최연희	최인기	한병도	허천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황우여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황진하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영
				차명진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한병도	허천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황우여	황진하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9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7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명철	신상진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시민	유인태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창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영

차명진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한병도	허천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황우여	황진하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7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노현송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문석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박병석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재완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형준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명철	신상진	신학용	심대평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시민	유인태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영
 차명진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한병도 허천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김성조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병헌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의용 정의화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영 차명진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인기
 최연희 최인기 한병도 허천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황우여
 황진하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189인)
찬성 의원(189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기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심대평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시민 유인태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0인)
찬성 의원(158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철현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영춘 김영준
 김용갑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진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명
 신상진 신중식 심대평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승 회 유 시 민
 유 필 우 윤 두 환 윤 호 중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성 구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웅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희 수 제 종 길
 조 성 래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채 일 병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성 최 연 희
 한 광 원 한 병 도 허 천 홍 미 영
 홍 재 형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박 세 환

기권 의원(1인)
 김 형 오

신 중 식 심 대 평 심 재 철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승 회 유 시 민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성 구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웅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희 수 제 종 길 조 성 래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성 최 연 희 한 광 원 한 병 도
 허 천 홍 미 영 홍 재 형 황 진 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2인)

찬성 의원(160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흥 길	고 회 선
곽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철 현
김 근 태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윤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흥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형 주	김 형 주
나 경 원	남 경 필	노 현 송	노 현 송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석 호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상 돈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석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갑 원
서 상 기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명	신 상 진
신 중 식	심 대 평	심 재 철	안 명 옥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0인)

찬성 의원(160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흥 길	고 회 선
곽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철 현
김 근 태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형 주	김 회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현 송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희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석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갑 원
서 상 기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명	신 상 진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송영선 신명신신상진신중식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심대평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필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광철 이기우 윤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기우 윤승희 유시민 유필우 윤두환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경재
 이명규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계진 이광철 이기우 이명규 이병석
 이상열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은영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이인기 이인영 이진구 이해봉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이주영 이진구 임인배 임종석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태희
 장윤석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전재희 정갑윤 정세균 정의화
 정진섭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희수
 조정식 주승용 진영 차명진 제종길 조성래 조정식 주승용
 채수찬 채일병 최구식 최규식 진영 차명진 조성래 채수찬 최구식
 최성 최연희 한광원 한병도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연희
 허천 홍미영 홍재형 황진하 한광원 한병도 허천 홍미영

기권 의원(2인)

박세환 최규성

송영선 신명신신상진신중식
 심대평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기우 이명규
 이근식 이광철 이기우 이명규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병석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진구 이해봉
 이주영 이진구 임인배 임종석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전재희 정갑윤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정식 주승용
 차명진 조성래 채수찬 최구식
 최규식 진영 차명진 조성래
 최성 최연희 한광원 한병도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연희
 허천 홍미영 홍재형 황진하
 한광원 한병도 허천 홍미영

기권 의원(1인)

김기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9인)

찬성 의원(158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철현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3인)

찬성 의원(161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철현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경 김태홍
 김정권 김춘진 김태년 김태주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주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명 신상진
 신중식 심대평 심재철 안명옥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정식 주승용 진영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연희 한광원
 한병도 허천 홍미영 홍재형
 황진하

기권 의원(2인)

안민석 이원복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명 신상진 신중식
 심대평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원영 이재웅 이은영 이종구
 이인영 이한구 이해봉 이해희
 임인배 임종석 임태희 임영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동채
 정장선 정진석 조성래 조성래
 차명진 차명진 채수찬 최규식
 최규성 최연희 한광원 한병도
 홍미영 홍재형 황진하

기권 의원(2인)

박세환 조정식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62인)

찬성 의원(160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철현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航路標識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4인)

찬성 의원(163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철현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주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 희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돈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현 송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재 완 박 박 진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박 찬 석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문 희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돈
 서 갑 원 서 상 기 서 혜 석 선 병 렬 박 승 환 박 재 완 박 박 진
 손 봉 숙 송 영 선 신 명 신 상 진 신 상 진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신 중 식 심 대 평 심 재 철 안 명 옥 안 명 옥 안 명 옥 신 병 렬
 안 상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엄 호 성 엄 호 성 신 명 철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유 기 흥 유 기 흥 유 기 흥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준 유 기 준 유 기 준 유 기 준
 유 승 회 유 시 민 유 필 우 윤 두 환 양 승 조 엄 호 성 안 민 석 안 상 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경 재 이 경 재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명 규 이 명 규 이 명 규 이 명 규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배 이 시 종 이 시 종 이 시 종 이 시 종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시 종 이 원 영 이 원 영 이 원 영 이 원 영
 이 상 열 이 성 구 이 승 회 이 재 응 이 재 응 이 재 응 이 재 응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원 영 이 원 영 이 원 영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영 이 인 영 이 인 영 이 인 영 이 인 영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임 인 배 임 인 배 임 인 배 임 인 배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인 배 임 인 배 임 인 배
 임 종 석 임 태 회 임 해 규 장 경 수 장 경 수 장 경 수 장 경 수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전 재 회 전 재 회 전 재 회 전 재 회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동 채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의 화 정 의 화 정 의 화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희 수 정 희 수 정 희 수 정 희 수 정 희 수
 제 종 길 조 성 래 조 정 식 주 승 용 주 승 용 주 승 용 주 승 용 주 승 용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채 일 병 채 일 병 채 일 병 채 일 병 채 일 병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성 천 최 성 천 최 성 천 최 성 천 최 성 천
 최 연 회 한 광 원 한 병 도 허 천 허 천 허 천 허 천 허 천
 홍 미 영 홍 재 형 황 진 하 황 진 하 황 진 하 황 진 하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안 민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현 송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박 기 춘 박 승 환 박 재 완 박 박 진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상 기 서 혜 석 선 병 렬
 송 영 선 신 명 철
 심 대 평 안 민 석 안 상 수
 오 영 식 원 혜 영 유 승 회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경 재
 이 명 규 이 시 종 이 원 영
 이 재 응 이 재 응 이 재 응
 임 인 배 임 인 배 임 인 배
 장 경 수 전 재 회 정 의 화
 정 희 수 주 승 용 주 승 용
 채 일 병 채 일 병 채 일 병
 최 성 천 최 성 천 최 성 천
기권 의원(2인)
 김 덕 규 이 원 복

○內水面漁業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65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고 희 선
 공 성 진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철 현 김 근 태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형 주

○원양산업발전법안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67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고 희 선
 공 성 진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철 현 김 근 태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영 덕 김 영 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경	김송자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재윤	김정권	김춘진	김태년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경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재윤	김정권	김춘진	김태년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문석호	문희	박기춘	박병석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문석호	문희	박기춘	박병석
박진	박찬석	배기선	배일도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혜석	박진	박찬석	배기선	배일도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혜석
신명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심대평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신명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심대평	심재철	안명옥	안상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혜영
유승희	유시민	유필우	윤두환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경재	유시민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윤호중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상경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은영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종구	이원복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인영	이재웅	이주영	이주호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화영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임인배	임종석	임태희	임해규
장영달	장윤석	전재희	정갑윤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정동채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세균
정진석	정진섭	정희수	제종길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조성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정식
진영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주성영	주승용	진영	차명진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성천	채수찬	채일병	최구식	최규성
최연희	한광원	한병도	허천	최규식	최성천	최연희	한광원
홍미영	홍재형	황진하		한병도	허천	홍미영	홍재형

○소형선박저당법안

투표 의원(166인)

찬성 의원(165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철현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기권 의원(1인)

안민석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63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철현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고경화
김동철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강조홍	강진화	강홍길	고희선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김애실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권철현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용갑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주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현송	김송자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경
문희박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춘진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석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김학원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남경필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송영선	신명	신상진	신중식	문병호	문석호	문희박	박기춘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명옥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재완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박진	박찬석	배기선	배일도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선병렬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명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필우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대평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원희룡	우상호	우윤근	원혜영
이명규	이병석	이상경	이상배	유시민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이상열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윤호중	이경숙	윤두환	윤원호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계진	이광철	이경재	이계안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근식	이기우	이균현	이규택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한구	이해봉	임인배	임종석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장영달	장윤석	전재희	정동채	이인영	이재웅	이종구	이주영
정문헌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정진석	정진섭	정희수	제종길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태희
조성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장윤석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성천	정문헌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최연희	한광원	한병도	허천	정진석	정진섭	정희수	제종길
홍미영	홍재형	황진하		조성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인)			
이상민				김학송 이원복			
기권 의원(4인)				기권 의원(2인)			
김영덕 박기춘 이화영 정갑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7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7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철현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경	김재운
김재홍	김정권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명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춘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세균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진영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연희	한광원	한병도	허천

홍미영 홍재형 황진하

반대 의원(1인)

김성조

기권 의원(1인)

정동채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66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철현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경
김재운	김재홍	김정권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명옥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춘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시종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은영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종구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이한구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임종석
장영달	장윤석	전재희	장복심
정동채	정문헌	정세균	정갑윤

정진석 정진섭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진영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연희 한병도 허천 홍미영
 홍재형 황진하

기권 의원(2인)
 안민석 이병석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문현 정세균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진영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최구식 최규식 최성 최연희
 한병도 허천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황진하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70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고희선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환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해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54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고경화
 고조홍 고흥길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환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명 신상진 신학용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병석 이상경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해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전 재 희	정 동 채	정 문 현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진 석	정 진 섭	정 희 수
조 성 래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채 일 병
최 구 식	최 규 식	최 성	최 연 희
한 병 도	허 천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황 진 하		

반대 의원(5인)
 고 희 선 김 부 겸 배 일 도 안 홍 준
 이 계 진

기권 의원(12인)
 고 진 화 김 정 권 송 영 선 심 대 평
 심 재 철 유 필 우 이 승 희 이 한 구
 이 해 봉 임 태 희 정 갑 윤 제 종 길

이 명 규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성 구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웅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해 봉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중 석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전 재 희
정 동 채	정 문 현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진 석	정 진 섭	정 희 수	제 종 길
조 성 래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채 일 병
최 구 식	최 규 식	최 성	최 연 희
한 병 도	허 천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황 진 하		

반대 의원(5인)
 고 희 선 김 애 실 배 일 도 이 승 희
 이 한 구

기권 의원(9인)
 고 진 화 김 부 겸 맹 형 규 송 영 선
 유 필 우 이 중 구 임 태 희 정 갑 윤
 최 인 기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2인)
찬성 의원(158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고 경 화
고 조 흥	고 흥 길	공 성 진	곽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철 현
김 교 흥	김 근 태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권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현 송	류 근 찬	문 병 호
문 희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석	배 기 선	백 원 우	서 갑 원
서 상 기	서 해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신 명	신 상 진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승 희	유 시 민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2인)
찬성 의원(170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고 희 선
공 성 진	곽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철 현	김 교 흥	김 근 태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권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노 영 민	노 현 송	류 근 찬	남 경 필
문 병 호	문 희	박 기 춘	맹 형 규
박 상 돈	박 세 환	박 승 환	박 병 석
박 진	박 찬 석	배 기 선	박 재 완
백 원 우	서 갑 원	서 상 기	배 일 도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선 병 렬
신 상 진	신 학 용	심 대 평	신 명 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문헌 정세균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진영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최구식
 최규식 최성 최연희 최인기
 한광원 한병도 허천홍미영
 홍재형 황진하
기권 의원(2인)
 이한구 홍문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명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세균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진영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최구식 최규식 최성 최연희
 한광원 한병도 허천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최인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75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3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명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이상호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세균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진영
 채수찬 채일병 최구식 최규식
 최성 최연희 최인기 한광원
 한병도 허천 홍문표 홍미영

기권 의원(2인)

박세환 차명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81인)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고희선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형오
 김형주 김홍엽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 박계동
 박명광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병렬 신상진 신중식 심대평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이상호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재웅 이재용
 이재창 이종구 이진구 이해봉
 이해찬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진섭 정진섭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순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한병도 허천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황우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

투표 의원(180인)

황진하

찬성 의원(177인)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형오	김형주
김홍업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	박계동	박명광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중식	심대평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진구	이해봉
이해찬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순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한병도	허천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3인)

박세환 이 상 민 이 중 구

○公認勞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79인)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형오	김형주
김홍업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중식
심대평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진구	이해봉	이해찬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순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한병도 허천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이상민

기권 의원(2인)

김종률 안상수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진구 이해봉 이해찬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순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한병도 허천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안상수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5인)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형오 김형주 김홍업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중식 심대평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流通團地開發促進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1인)

강길부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형오 김형주 김홍업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중식 심대평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김형주	김홍업	김희정	나경원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노영민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우상호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문병호	문석호	문희	박계동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배기선
이경제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상기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이낙연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성권	신중식	심대평	심재철	안명옥
이승희	이시종	이용희	이원복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이윤성	이은영	이재오	이재웅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이재창	이종구	이진구	이해봉	우상호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이해찬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장영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세균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정의용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순형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이낙연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용희
최규식	최연희	한병도	허천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재오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황우여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진구
황진하				이해봉	이해찬	임태희	장경수

반대 의원(1인)

안상수

기권 의원(2인)

이상득 최병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6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형오

기권 의원(2인)

송영선 차명진

(송영선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찬성 의원 187인, 기권 의원 1인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49인)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무성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진표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홍엽	노영민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재관	선병렬
송영길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중식	안명옥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오영식
오제세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용희	이윤성	이은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주호
이진구	임인배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의용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형근	정희수	제중길
조순형	조일현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차명진	채일병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연희	한병도	허천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8인)

김기춘	김명주	김영선	김정훈
김학원	류근찬	박찬숙	안상수
엄호성	이낙연	이상경	이상열
이해봉	장윤석	전여옥	주호영
진영	최병국		

기권 의원(20인)

고진화	김종률	김춘진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박상돈	송영선

심대평	심재철	이강래	이계안
이승희	이원복	이종구	이혜훈
임해규	전재희	정봉주	천정배

○私立學校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43인)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재경	김재원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희
박계동	박명광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배기선	변재일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중식
심재철	안명옥	안상수	안홍준
양형일	엄호성	오제세	원혜영
유기준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이강두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낙연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임인배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의용
정의화	정진섭	정형근	정희수
조순형	조일현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허천	홍문표
홍재형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26인)

강기정	강혜숙	고진화	김낙순
-----	-----	-----	-----

김 선 미 김 원 응 김 재 윤 김 종 룰
 김 태 년 박 찬 석 백 원 우 선 병 렬
 신 기 남 양 승 조 유 기 흥 유 선 호
 이 경 숙 이 광 철 이 상 민 정 봉 주
 제 종 길 지 병 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규 성 한 병 도

기권 의원(17인)

공 성 진 김 덕 규 김 영 선 김 흥 업
 문 석 호 박 병 석 박 찬 숙 배 일 도
 심 대 평 오 영 식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기 우 이 상 경 장 영 달
 정 진 석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임 인 배 임 태 회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전 여 옥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병 국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진 석 정 진 섭 정 형 근
 정 희 수 조 순 형 조 일 현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일 병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희 한 병 도 허 천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6인)

김 명 주 김 영 선 김 종 룰 이 상 민
 정 봉 주 주 호 영

기권 의원(22인)

고 조 흥 고 진 화 공 성 진 김 덕 규
 김 애 실 김 형 주 김 흥 업 김 희 정
 나 경 원 박 찬 숙 배 일 도 서 혜 석
 송 영 선 심 재 철 이 강 래 이 상 경
 이 종 구 이 해 봉 이 혜 훈 임 해 규
 전 재 희 최 규 성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60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재 섭 고 경 화
 고 흥 길 고 희 선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선택 권 영 세 권 철 현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주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표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형 오
 노 영 민 노 현 송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회 박 계 동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석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재 관 선 병 렬
 송 영 길 신 국 환 신 기 남 신 명
 신 상 진 신 중 식 심 대 평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중
 이 원 복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재 오

○출석 의원(282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고 희 선 공 성 진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선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근 태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결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룰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한 길
 김 희 선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회 민 병 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대평 심상정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기우 이낙연
 이규택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해찬
 이해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허천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출장 의원(4인)

심재엽 유재건 이광재 조배숙

○청가 의원(8인)

권오을 김효석 문희상 안택수
 장향숙 한명숙 허태열 홍창선

○출석 국무위원

부총리 겸 관료 오규재
 재정경제부장관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성호
 법무부장관 김장수
 국방부장관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 박홍수
 농림부장관 변재진
 보건복지부 이치범
 환경부장관 이상섭
 노동부장관 이용현
 건설교통부장관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

○출석 정부위원

문화관광부차관 박양우
 산업자원부제2차관 이재훈
 여성가족부차관 김창순
 국가보훈처차장 정일권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민동기

【보고사항】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윤호중	노영민	열린우리당	2007. 7. 2

○교섭단체 구성

중도통합민주당

(2007. 6. 29)

○교섭단체 소속의원 명부 제출

의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강봉균 김낙순 김송자 김종인 김한길 김홍업 김효석 노현송 박상돈 변재일 서재관 손봉숙 신국환 신중식 양형일 엄동연 우제창 우제항 유선호 유필우 이근식 이낙연 이상열 이승희	중도통합 민주당	2007. 6. 29

의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이인제 장경수 조배숙 조순형 조일현 주승용 채일병 최규식 최용규 최인기	중도통합 민주당	2007. 6. 29

○교섭단체 해체

중도개혁통합신당

(2007. 6. 29)

○의안 제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07. 7. 2 이낙연 · 강창일 · 김영춘 · 김정권 · 신중식 · 엄호성 · 유재건 · 이경제 · 이영호 · 정진석 · 주승용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

(2007. 7. 2 장복심 · 염동연 · 서혜석 · 강기정 · 김동철 · 김명자 · 장경수 · 백원우 · 이목희 · 노응래 · 정장선 · 박상돈 · 이경제 · 변재일 · 신명 의원 발의)

이상 2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광원 의원 대표발의)

(2007. 7. 2 한광원 · 김영덕 · 김우남 · 신중식 · 김낙성 · 안영근 · 장복심 · 신학용 · 박순자 · 정봉주 · 우윤근 · 이시중 · 이상배 의원 발의)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07. 7. 2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7. 7. 2 산업자원위원장 제출)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이광철 의원 대표발의)

(2007. 7. 2 이광철 · 김재윤 · 백원우 · 선병렬 · 박찬석 · 강창일 · 심대평 · 김형주 · 문병호 · 김성곤 · 이인영 · 정청래 · 김태년 · 강혜숙 · 전병헌 · 이명규 · 강길부 · 이미경 · 이경숙 · 신명 · 최규성 · 윤원호 · 이시중 · 민병두 · 김선미 · 이광재 의원 발의)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세환 의원 대표발의)

(2007. 7. 2 박세환 · 심재엽 · 신상진 · 이성구 ·

이인기 · 김태년 · 황우여 · 김양수 · 엄호성 · 김희정 · 유기준 의원 발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07. 7. 3 정무위원장 제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07. 7. 2 교육위원장 제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07. 7. 3 교육위원장 제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07. 7. 2 행정자치위원장 제출)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流通團地開發促進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07. 7. 3 건설교통위원장 제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7. 7. 2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公認勞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7. 7. 2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07. 7. 2 권경석 · 김기현 · 김명주 · 김재경 · 김정권 · 김정훈 · 김양수 · 김학원 · 배일도 · 심재덕 · 안홍준 · 이주영 · 정갑윤 · 정두언 의원 발의)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07. 7. 2 권경석 · 김기현 · 김명주 · 김재경 · 김정권 · 김정훈 · 김양수 · 김학원 · 배일도 · 심재덕 · 안홍준 · 이주영 · 정갑윤 · 정두언 의원 발의)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대안)

(2007. 7. 2 재정경제위원장 제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2007. 7. 3 재정경제위원장 제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안(대안)

(이상 2건 2007. 7. 3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제출)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07. 7. 3 보건복지위원회 제출)

○의안 심사

住宅賃貸借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

(2006. 3. 28 김태환·공성진·김성조·김재경·김재원·박세환·박찬숙·서재관·손봉숙·안상수·안택수·엄호성·윤두환·이계경·이명규·이상배·이시종·임인배·장운석·주성영 의원 발의)

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 17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홍미영 의원 대표발의)

(2005. 6. 13 홍미영·이성권·이혜훈·정청래·엄호성·이윤성·노현송·이계경·유시민·박세환·이재오·노회찬·유인태·이경숙·이상민·최성·김형주·장영달·윤원호·박상돈·안상수·김희정·김교홍·허태열·유필우·김재홍·최규성·최용규·손봉숙·이광철·안병엽·원희룡·한명숙·이호웅·유승희·박순자·우제항·김정훈·박계동·이영순·조경태·염동연·이계진·문학진·강혜숙·김태홍·신국환·오제세·조성래·신기남·신중식·김재경·장향숙·진수희·최규식·신상진·서갑원·이인영·송영길·정봉주·이근식·전병현·김춘진·김태년·이시종·이은영·이종걸·이목희·정병국·윤호중·조정식·최순영·이미경·김희선·김덕규·김애실·강기정·김영숙·서혜석·김현미·배기선·권영길·이계안·김부겸·권선택·권영세·조배숙 의원 발의)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2005. 11. 7 우윤근·주승용·양형일·박명광·안민석·최규식·신중식·노영민·김낙순·이정일·정성호·장향숙 의원 발의)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6. 5. 26 안명옥·이계경·유기준·김영선·안상수·이인기·배일도·박재완·정의

화·김석준 의원 발의)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박명광 의원 대표발의)

(2006. 6. 30 박명광·정문현·안상수·이성권·박기춘·심재덕·노현송·이상경·김영선·이근식·김우남·정성호·엄호성·이계경·손봉숙·강기정·이해봉 의원 발의)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 이계경·김석준·이은영·박계동·이상경·이상배·이성권·최철국·차명진·심재덕 의원 발의)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2004. 12. 8 박재완·서상기·권철현·정병국·유기준·박성범·박순자·서병수·이해봉·이상득·안택수 의원 발의)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2005. 3. 24 박재완·엄호성·유정복·박세환·이윤성·윤건영·이인기·서병수·정두언·이한구·이주호·정화원·고경화·김문수·권경석·김석준·김충환·이병석·이계진 의원 발의)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6 김성조·김재경·이혜훈·황우여·임인배·이인기·이명규·김태환·주성영·강재섭·엄호성·이계진·이해봉·이병석 의원 발의)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06. 6. 14 김재윤·이해봉·김재홍·이원영·김우남·강창일·이상민·강기정·신학용·민병두·엄호성·이성권·안민석·김동철·박기춘·심재덕 의원 발의)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

(2006. 11. 22 선병렬·이은영·제종길·이근식·한광원·양승조·박기춘·정성호·김교홍·김현미·최철국·주승용·김낙순·강창일·이인영·김혁규·김영주·우원식 의원 발의)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06. 11. 24 김동철·배기선·김태홍·조성

래·강기정·정성호·양형일·염동연·지병문·이종걸·채일병·우윤근·이상경·최재천·정동채·천정배·박상돈·박재완·김양수·이은영·장복심·이강두·고홍길·서재관·최용규·이계경·정두언 의원 발의)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07. 2. 2 김기현·엄호성·김태년·이계경·고조흥·신상진·박재완·김명주·이경재·안상수·서재관·오제세 의원 발의)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희 의원 대표발의)

(2007. 3. 15 이용희·강창일·박기춘·홍미영·조성래·홍재형·김춘진·이시종·김동철·윤원호·최규식·양형일 의원 발의)

(이상 13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5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 의원 대표발의)

(2006. 3. 20 이상경·박상돈·김태홍·주승용·박재완·정봉주·정병국·주호영·김영주·박찬숙·이계안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 의원 대표발의)

(2006. 12. 29 이상경·김재윤·신학용·김우남·김영주·이계안·심재철·양승조·임종인·안민석·서해석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 2. 21 정부 제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 10. 9 정부 제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

(2006. 11. 29 김양수·김정권·안홍준·이주호·정병국·박형준·진수희·김명주·정진섭·이성권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9 김애실·이해봉·이인기·박재완·엄호성·김정훈·정갑윤·신상진·임태희·이성구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2007. 2. 6 신학용·김종률·이시종·정봉주·서해석·김춘진·김교홍·문병호·윤원호·박명광·최규식·홍창선·김명자·유승희·이인영·정의용·김재홍·심재덕·조정식·김형주·이영호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

(2007. 4. 12 이계경·안택수·엄호성·임태희·김양수·이성권·안명옥·김석준·박계동·김정훈 의원 발의)

(이상 7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8건 정무위원장 보고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2007. 3. 13 엄호성·김애실·이계경·심재엽·서상기·이해봉·고홍길·차명진·진수희·안명옥·고경화·이한구·서병수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2006. 12. 29 정부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

(2007. 3. 14 이종구·권오을·김애실·김재경·김희정·심재엽·안명옥·이계경·이주영·정의화·진수희·차명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5. 22 정부 제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택 의원 대표발의)

(2007. 1. 12 이규택·김기현·김정훈·이군현·엄호성·박세환·신상진·박상돈·김부겸·황우여·고조흥·박찬숙·김태년·유정복·박재완·권선택·허태열 의원 발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

(2006. 8. 28 정부 제출)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

(2006. 9. 12 최규식·안병엽·강창일·노현

송 · 서재관 · 우윤근 · 양형일 · 홍미영 · 강기정 · 장복심 · 박찬석 · 조성래 · 이은영 · 우제항 · 박기춘 의원 발의)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2 이성구 · 김학송 · 이석현 · 고조흥 · 공성진 · 송영선 · 광성문 · 김기현 · 문희 · 심재철 · 박재완 · 박찬숙 · 이명규 · 김태환 · 김송자 · 정화원 의원 발의)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발의)

(2005. 11. 9 우원식 의원 외 90인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광원 의원 대표발의)

(2006. 11. 17 한광원 · 노웅래 · 이영호 · 박찬석 · 이시중 · 조경태 · 김우남 · 장복심 · 김교홍 · 안영근 · 박상돈 · 유필우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07. 4. 2 우원식 · 김낙순 · 노웅래 · 이인영 · 임종석 · 김영춘 · 이화영 · 정봉주 · 이미경 · 노현송 · 김형주 · 오영식 · 김희선 · 이목희 · 김근태 · 유기홍 · 최규식 · 김덕규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07. 4. 2 우원식 · 김낙순 · 노웅래 · 이인영 · 임종석 · 김영춘 · 이화영 · 정봉주 · 이미경 · 노현송 · 김형주 · 오영식 · 김희선 · 이목희 · 김근태 · 유기홍 · 최규식 · 김덕규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07. 4. 12 김충환 · 이진구 · 권영세 · 정두언 · 안홍준 · 최경환 · 정병국 · 고경화 · 박승환 · 김무성 · 이재오 · 엄호성 · 이해봉 · 진수희 · 고조흥 · 심재철 · 이인기 · 최구식 · 김양수 · 허태열 · 맹형규 · 유기준 · 황우여 · 박성범 · 김영숙 · 이주호 · 이재웅 · 박종근 · 박순자 · 진영 · 이강두 · 임해규 · 김영덕 · 서병수 · 고흥길 · 김석준 · 박진 · 윤두환 · 김명주 · 나경원 · 정형근 · 박재완 · 이명규 · 신상진 · 박찬숙 · 황진하 · 임인배 · 공성진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07. 4. 12 김충환 · 권영세 · 이재오 · 신상진 · 박찬숙 · 이주호 · 이재웅 · 공성진 · 이명규 · 박재완 · 김재원 · 김명주 · 김학송 · 김무성 · 윤두환 · 박승환 · 정병국 · 고경화 · 유승민 · 김영덕 · 진영 · 엄호성 · 이해봉 · 진수희 · 고조흥 · 임해규 · 서병수 · 심재철 · 고흥

길 · 황우여 · 박성범 · 김영숙 · 안홍준 · 박순자 · 맹형규 · 정형근 · 나경원 · 이강두 · 유기준 · 이상득 · 임인배 · 박진 · 김석준 · 이인기 · 최경환 · 최구식 · 김양수 · 허태열 · 이진구 · 유정복 · 정두언 · 박종근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2007. 5. 9 박기춘 · 강창일 · 김재윤 · 홍미영 · 윤호중 · 양형일 · 원혜영 · 정장선 · 조성래 · 김낙순 의원 발의)

(이상 9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2건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2007. 2. 8 이병석 · 이상득 · 배일도 · 김재원 · 이인기 · 신상진 · 황우여 · 김무성 · 김정훈 · 김충환 · 김우남 의원 발의)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

(2007. 1. 22 정부 제출)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항 의원 대표발의)

(2006. 7. 5 우제항 · 강길부 · 강창일 · 김선미 · 변재일 · 양형일 · 우윤근 · 정장선 · 최재성 · 최철국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3건 국방위원장 보고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

(2007. 4. 11 김영숙 · 이재오 · 김교홍 · 이미경 · 정봉주 · 최순영 · 강기갑 · 현애자 · 서갑원 · 심상정 · 안홍준 · 임인배 · 임해규 · 김애실 · 안명옥 · 김성조 · 진수희 · 박찬숙 · 권경석 · 정종복 · 안경률 · 김양수 · 허천 · 황진하 · 배일도 · 김명주 · 천영세 · 권영길 · 민병두 · 유기홍 · 이근현 · 이영순 · 안민석 · 이원복 · 주호영 의원 발의)

한국고전번역원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07. 1. 4 유기홍 · 이성권 · 박재완 · 강창일 · 정성호 · 이계경 · 김교홍 · 이경숙 · 안민석 · 이미경 · 김재윤 · 김영춘 · 이광철 · 이인영 · 최재천 · 정의용 · 서혜석 · 민병두 · 정청래 · 백원우 · 김낙순 · 박병석 · 우제창 · 제종길 · 김재홍 · 홍미영 · 윤원호 · 지병문 · 정봉주 ·

최순영 · 강기정 · 임해규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 발의)

(2006. 11. 6 김재윤 · 강창일 · 강혜숙 · 김동철 · 김태년 · 김희선 · 민병두 · 박재완 · 안민석 · 안상수 · 이광재 · 이계경 · 이계진 · 이미경 · 이인기 · 이영호 · 이해봉 · 지병문 · 제종길 · 정청래 · 황우여 의원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

(2006. 12. 29 안민석 · 천정배 · 양승조 · 김재윤 · 김교홍 · 정봉주 · 강기정 · 윤호중 · 이미경 · 이상경 · 서해석 의원 발의)

教育基本法 一部改正法律案(이주호 의원 대표 발의)

(2005. 4. 7 이주호 · 고경화 · 권철현 · 김기현 · 김영덕 · 김영숙 · 김재경 · 김충환 · 박재완 · 배일도 · 유승민 · 윤건영 · 이종구 · 정두언 · 정병국 · 진수희 · 진영 · 최인기 · 황진하 의원의 101인 발의)

教育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대표 발의)

(2005. 5. 6 김선미 · 장경수 · 제종길 · 김덕규 · 정성호 · 최재성 · 최성 · 강기정 · 이인영 · 정장선 · 장향숙 · 서갑원 · 배기선 · 서해석 의원 발의)

教育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

(2005. 6. 1 변재일 · 노영민 · 강혜숙 · 김효석 · 우제항 · 이해봉 · 이종걸 · 이시종 · 김종률 · 유승희 · 류근찬 · 염동연 · 양형일 · 유재건 의원 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 발의)

(2006. 8. 25 유정복 · 황우여 · 유기준 · 이해봉 · 안상수 · 박상돈 · 신상진 · 김종률 · 이인기 · 김영숙 · 김애실 · 신중식 · 허태열 · 정문현 의원 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 발의)

(2005. 12. 22 김기현 · 김명주 · 유기준 · 이주호 · 임해규 · 박형준 · 엄호성 · 공성진 · 이계경 · 이인기 · 윤두환 · 김영숙 의원 발의)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2006. 4. 20 이주호 · 고조홍 · 권오을 · 김명주 · 박재완 · 배일도 · 신국환 · 신학용 · 안상수 · 엄호성 · 윤건영 · 원희룡 · 이성권 · 이인기 · 이해봉 · 정병국 · 정성호 · 진수희 의원 발의)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06. 5. 9 유기홍 · 지병문 · 백원우 · 김근태 · 이미경 · 이인영 · 조배숙 · 구논희 · 정봉주 · 전병헌 · 이호웅 의원 발의)

(이상 9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1건 교육위원장 보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

(2007. 6. 12 최구식 · 정청래 · 김재윤 · 강혜숙 · 이광재 · 김희선 · 윤원호 · 이광철 · 지병문 · 우상호 · 박찬숙 · 이재웅 · 장윤석 · 정종복 · 이재오 · 김학원 · 전여옥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 8. 14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2건 문화관광위원장 보고

원양산업발전법안(이영호 의원 대표발의)

(2007. 6. 7 이영호 · 장영달 · 김진표 · 김동철 · 유기홍 · 정봉주 · 조일현 · 윤원호 · 김충환 · 김무성 · 이상열 · 김재윤 · 이기우 · 유승희 · 윤호중 · 문석호 · 김형오 · 정장선 · 장향숙 · 강혜숙 · 김종률 · 이상득 · 서상기 · 허태열 · 강길부 · 박명광 · 홍재형 · 박찬석 · 송영길 · 조성래 · 김춘진 · 최철국 · 선병렬 · 이상경 · 노영민 · 홍미영 · 한광원 · 김우남 · 최규성 · 박영선 · 심재덕 · 문병호 · 최재성 · 김성곤 · 원혜영 · 정갑윤 · 우원식 · 조정식 · 조경태 · 이목희 · 이강두 의원 발의)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2007. 4. 3 최규성 · 한병도 · 이기우 · 정갑윤 · 이경숙 · 한광원 · 최철국 · 김우남 · 최인기 · 유선호 · 류근찬 · 문석호 · 원혜영 의원 발의)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2007. 3. 20 정부 제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06. 10. 30 정부 제출)

소형선박저당법안

(2006. 5. 3 정부 제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06. 2. 24 정부 제출)

(이상 6건 수정하여 의결)

농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06. 12. 21 김우남·김부겸·김재윤·강창일·김광원·이강두·류근찬·서혜석·김낙성·신중식·한광원·조경태·우윤근·한화갑·이인영·김영춘·염동연 의원 발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2007. 5. 16 정부 제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5 조경태·김명주·이해봉·한광원·주승용·김우남·김종률·우윤근·박상돈·장경수 의원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2. 18 정부 제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06. 1. 3 김우남·배기선·임종석·이기우·이인영·강기정·이강두·신중식·한광원·조경태·송영선·주승용·김낙성·강창일·김부겸·서갑원·이상경·제종길·류근찬·이영호·김재윤 의원 발의)

(이상 5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1건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보고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성 의원 대표발의)

(2007. 5. 31 이운성·이명규·곽성문·김성조·박순자·원희룡·이성권·김태환·조정식·정장선 의원 발의)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07. 5. 23 김태년·박상돈·이광철·서갑원·민병두·백원우·이광재·이화영·신상진·우상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07. 5. 17 조정식·우제항·김형주·이명

규·이화영·우원식·이시종·오영식·김부겸·김영주 의원 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최철국 의원 대표발의)

(2006. 7. 25 최철국·조성태·최규성·윤원호·김혁규·이상열·조경태·오영식·김형주·조정식·곽성문·우제항·이상배·염동연·노영민·서갑원·김광원·김태년·배일도·이시종·김동철·박찬석·장향숙·정성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건 산업자원위원장 보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1. 29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기초연금법안(현애자 의원 대표발의)

(2006. 10. 31 현애자·이영순·노희찬·심상정·천영세·단병호·권영길·강기갑·최순영·임종인 의원 발의)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 의원 발의)

(2007. 4. 25 박재완 의원 외 126인 발의)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2007. 4. 25 강기정·김동철·김덕규·이인영·김우남·홍미영·강창일·장향숙·장복심·백원우·양승조·김영주 의원 발의)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2007. 6. 4 강기정·김효석·지병문·장향숙·염동연·김선미·홍미영·백원우·장복심·강창일 의원 발의)

國民年金法 일부개정법률안(현애자 의원 대표발의)

(2006. 11. 14 현애자·최순영·강기갑·노희찬·심상정·천영세·단병호·이영순·권영길·임종인 의원 발의)

國民年金法 전부개정법률안

(2006. 12. 6 정부 제출)

國民年金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2007. 4. 17 김효석·장영달·김진표·최인기·강기정·김선미·김춘진·백원우·양승조·윤호중·이기우·장복심·장향숙 의원 발

의)

國民年金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 의원 대표 발의)

(2007. 4. 17 정형근·현애자 의원 외 134인 발의)

國民年金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 발의)

(2007. 4. 18 이종걸·노현송·김낙순·노웅래·변재일·우윤근·양형일·염동연·박상돈·제종길·이근식·최규식·장경수·서재관·전병헌·강봉균 의원 발의)

(이상 9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0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

(2007. 6. 5 정부 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 발의)

(2007. 6. 4 안홍준·단병호·맹형규·배일도·신상진·우원식·이경재·이상배·정진섭·제종길·조정래·한선교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07. 5. 16 정부 제출)

敎員의勞動組合設立및운영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06. 11. 20 정부 제출)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公認勞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

(2007. 5. 31 정부 제출)

公認勞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 의원 대표 발의)

(2007. 6. 1 배일도·이원복·고진화·신명·이종구·윤건영·서상기·박계동·이재오·안명옥·차명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流通團地開發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 의원 대표 발의)

(2006. 9. 14 박재완·신상진·엄호성·배일도·심재철·이성구·공성진·이주호·김애실·윤건영 의원 발의)

流通團地開發促進法 전부개정법률안

(2007. 1. 4 정부 제출)

화물유통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 발의)

(2006. 3. 29 노영민·우원식·김동철·신중식·주승용·이호용·이시중·우윤근·조경태·강혜숙·윤호중·박상돈 의원 발의)

화물유통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

(2006. 4. 11 정희수·엄호성·이인기·이계경·심재철·박형준·이상배·박성범·고조홍·박재완·남경필·정화원·정종복 의원 발의)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2006. 12. 20 정부 제출)

(이상 5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안 의원 대표 발의)

(2006. 3. 31 이계안·오제세·김동철·노현송·전병헌·이목희·지병문·염동연·이영호·신학용·김태년·이근식·안병엽·김성곤·심재덕·김형주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 발의)

(2006. 8. 7 김애실·신상진·김석준·이해봉·김종률·박상돈·유승희·엄호성·김태년·장윤석·박세환·김영숙·심재철·이계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여성가족위원장 보고

○심사기간 지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05. 10. 27 정부 제출)

私立學校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영 의원 대표 발의)

(2006. 12. 1 이은영·민병두·정봉주·강봉균·최철국·오제세·김현미·이영호·노웅래·정성호·김교홍·박기춘·선병렬·주승용·최성·문병호·변재일·장경수·우제창·최용규·이근식·유기홍·송영길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3일 심사기간을 7월 3일 23 시까지로 지정함

○청원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2007. 4. 20 서울 종로구 명륜동2가 8-1 우정타워 4층 KR 얼라이언스(주) 이금룡 외 4인으로부터 신학용 의원의 소개로 제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통지

중도통합민주당 중앙당 등록

2007. 6. 29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중도통합민주당의 중앙당 등록 통지가 있었음